

현안분석 2005-22

스포츠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스포츠 기본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

장 재 옥



스포츠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스포츠 기본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ports Law System

연구자 : 장재옥(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Chang, Jae-Ok

2015. 12.



국문 요약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스포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여가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법률은 “체육”이라는 국가 계도적 측면의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원과 육성책에는 상당히 미비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문화관광부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요구에 힘입어 「스포츠산업진흥법(안)」과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상태에 있지만 관계부처간의 업무범위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스포츠법은 더 이상 공법과 사법 분야의 이분화 구조가 아닌 스포츠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스포츠국가법과 스포츠자치법의 분야로 이를 바라보고 이해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함에 있어 스포츠종목 간의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을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민의 스포츠권을 인정하는 것 뿐 아니라 스포츠종목 즉, 육상, 수상, 항공스포츠의 구분없이 국가가 이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산업육성책을 펴는 등 스포츠 관련 법률이 국민의 스포츠권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제도로 자리 잡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 복지 행정을 위하여 스포츠는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서비스의 통합 서비스가 한 스포츠 관청에서 이루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국가를 위한 스포츠정책이 제시되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선행 작업이 바로 스포츠 관련 법률을 중복없이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다. 스포츠기본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라는 용어의 통일과 스포츠권의 인정이 필수라 할 것인데 비록 헌법상 스포츠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권의 연관해석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한 행정부서에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할 근거가 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현행 스포츠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스포츠 관련 입법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중심을 두었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스포츠권을 향유하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 키워드 : 스포츠법, 스포츠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권

Abstract

Apart from the life-enriching and fulfilling role of sports, it is also part of humankind's common culture in that it responds to an inherent human physical and mental desire. Sports as a cultural phenomenon affecting both humans' physical and mental aspects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a happy and vigorous society and for the attainment of the individual's psychosomatic health. It is, therefore, of the greatest significance that people should engage in sports throughout their lives.

However, the nation's positive laws excluded sports or were applied in a limited way to them. In our law system, we have used the title of "physical education," but we are also in need of laws for the promotion of sports.

Up until now, sports-related law has only been related to the "promotion of physical education for people" and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The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fully understands the impact of sports and has been involved in them through establishing policies and legal systems. Although there has been trouble among the authorities and other ministries, the authorities have to make a proposal to provide for the promotion of the sports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leisure sports.

Sport right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national and provincial area of the law, and the right is also recognized

to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all persons and to ban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in every area.

Sports rights are the idea that every person has a right to participate and enjoy sports. To protect and keep these fundamental rights, we have to investigate the social aspects of the rights through resolving legal theory tasks. Therefore, we have to prepare for the sports law to unify the terms of sports. Further, enactment of a sports fundamental law is required for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sports law.

In this study, the main purpose is firstly the analysis of sports-related law in other countries, and secondly, the proposal of enacting the sports fundamental act.

The sports fundamental act is needed so that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related interests is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as social progress.

※ Key words : Sports law, Sports fundamental act, Sports act for promo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for the people, Installing and supporting Sports facilities act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2
제 2 장 스포츠 법제 개관	13
제 1 절 서 설	13
제 2 절 스포츠 법의 현황	14
1. 스포츠의 개념	14
2. 스포츠법의 개념	19
3. 현행 스포츠법	21
제 3 절 현행 스포츠법의 한계	47
1. 서	47
2. 현행 스포츠법의 한계	47
3.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	63
제 3 장 각국 스포츠 입법 현황	65
제 1 절 프랑스	65
1. 서	65
2.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	66
제 2 절 독 일	73
1. 서	73
2. 베를린 주의 스포츠진흥법	74

제 3 절 일 본	79
1. 서	79
2. 스포츠 진흥법의 내용	80
3. 일본 스포츠 법학회의 스포츠 기본법 가안	84
제 4 절 캐나다	91
1. 서	91
2.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	92
 제 4 장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향	95
제 1 절 스포츠기본법의 의의	95
1. 스포츠 기본법의 의의	95
2.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과 효력	95
제 2 절 스포츠기본법 제정시 주의할 점	95
1. 서	95
2. 프로스포츠 근거규정의 마련	96
3.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지도자에 관한 규정의 보충	97
4. 산재된 법률의 부서 통합의 방향	98
5. 스포츠 조직에 관한 질서 명시의 필요	99
6. 스포츠관련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규정의 필요	100
7. 국제경기대회지원 상시 규정의 필요	102
8.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의 필요	103
9. 도박과 도핑에 대한 국가적 입장 필요	104
제 3 절 스포츠기본법의 필수내용	105
1. 스포츠 이념 규정	105
2. 제정목적과 용어의 선택	106
3. 국가의 스포츠에 관한 의무에 대한 내용 명시	108
4. 국민의 스포츠에 관한 권리 명시	111

5. 스포츠를 위한 각 부서간의 협력의무 명시	111
6.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 관련 법제간의 관계	111
7. 기타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	112
 제 5 장 결 론	115
 ◆ 부 록 1	
캐나다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	119
 ◆ 부 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스포츠와 레크레이션법”	137
 참 고 문 헌	1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스포츠가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있어 스포츠산업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스포츠를 향유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스포츠 수요의 확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더 많은 스포츠 시설의 확충, 더 나은 스포츠 서비스의 필요, 더 좋은 스포츠 용품의 제조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스포츠가 아닌 “체육”이라는 용어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이를 계도하고 이끄는 측면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는 한 인간이 자기 결정권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서 인생의 한 부분인 여가생활에서 이를 향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그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 제정당시의 입법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고, 현재의 스포츠에 대한 적절한 법규범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별법을 통하여 시대를 반영한 스포츠관련법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스포츠주무부서에서 보인 바 있다. 2005년 발의되어 있는 「스포츠산업진흥법안」과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관련부처간 업무범위의 충돌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에 따라 현행 스포츠 법제가 적절한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스포츠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스포츠법의 기본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현행 스포츠 법제인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월드컵 기장령, 올림픽기장령 등과 같은 문화관광부 직제인 체육국 관할 법률 외에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 스포츠와 관련된 법제 전 범위의 법률을 우선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체육법제가 스포츠 법제로 활용되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이라는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목적은 스포츠가 더 이상 “체육”이라는 국가적 계도 의미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국민 누구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그리하여 스포츠 기본법 제정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스포츠 법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제3장에서는 국가적 추세를 알아보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각 나라의 입법, 즉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의 스포츠법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스포츠 기본법의 필요성과 함께 제정방향, 필수적인 기본 내용과 가안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2 장 스포츠 법제 개관

제 1 절 서 설

그동안 한국의 스포츠 정책은 특정 정권을 유지하거나 장기집권을 위한 홍보수단이 되는 등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는 “계도적”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낸 현재의 스포츠 법제는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도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이를 국가가 수렴하는” 통합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것이라야 한다. 즉, 스포츠 법제의 제정방향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한 후 구체화하여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제의 제정 또는 개정 목적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세우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에 적합한 기획력을 발휘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부집행계획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가장 큰 목적을 스포츠 복지 행정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포츠 법제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식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그때마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다. 즉, 체육행정이나 체육업계에 관계있는 일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스포츠의 향유자가 국민 전체라는 것에 법률의 범위를 두고 법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동안 “생활스포츠”를 근본으로 하고 교육으로서의 “학교스포츠”와 대회 등 국제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전문스포츠”的 진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동안 “생활스포츠”를 위한 법률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관련 정책과 법제가 일부 스포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국민 전체를 위한 스포츠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포츠행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스포츠 행정정책이 국민 전체에게 열려 있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적절한 법제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체력의 향상은 국민이 아껴주는 직업스포츠인의 발굴,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당당하게 스포츠를 향유하는 주인공이 되는 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포츠 행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와 봉사행정이고 이 점을 잘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스포츠 행정가와 스포츠 관계자들의 기본자세가 이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법의 정신은 스포츠 법제에 담게 될 수 밖에 없다.

제 2 절 스포츠 법의 현황

1. 스포츠의 개념

(1) 스포츠 개념의 다양성

스포츠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규에서도¹⁾ 스포츠라는 단어는 자주 규정되

1) “스포츠”라는 단어는 2005년 12월 11일 현재, 23개의 법규에서 발견된다. 항만시설 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제5항 “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레이션등에 쓰이는 요트, 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 탐조 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를 비롯하여 23개의 법규에서 스포츠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22개의 법규이다.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4.
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9의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유기기구,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1, 4, 5, 7, 8, 9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5.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별표 0
6.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2, 4
7. 병역법시행규칙 서식 18, 서식 18의2
8.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9.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10. 방송법시행령 제60조
11.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12.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 2

고 있다. 스포츠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그 의미가 다가올 수도 있고 스포츠 활동의 모습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기까지 하여 스포츠의 의의를 분명히 정의 내리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스포츠”가 실정법규상 법률용어로 선택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스포츠의 법규범적 해석에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실내 또는 실외, 개인적으로 또는 팀을 이루어 경쟁하거나 또는 경쟁하지 않는 경기, 오락, 운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는 교육으로의 스포츠, 전문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 프로 스포츠라는 이름하에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파생되어 있는 프로스포츠는 엄청난 富를 창출하면서 스포츠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²⁾.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체육”에 관한 실정법상 정의가 있는데 이는 스포츠의 의의를 명명하는데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13.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 별표2
 - 14.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 15.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3조
 - 16.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0
 - 1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19.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별표1, 2
 - 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 2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 2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2) See A. Guttman, *From Ritual to Record: The Nature of Modern Sports* (1978); J. A. Cuddon,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Sports and Games* (1979); W. J. Baker, *Sports in the Western World* (rev. ed. 1989); B. G. Rader, *American Sports* (2d ed. 1990); R. A. Smith, *Sports and Freedom: The Rise of Big-Time College Athletics* (1990).

그밖에 「유럽스포츠 협장(2001년 개정)」에서는 “스포츠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모든 수준에서 경쟁의 결과를 포함하면서 임시적으로나 또는 조직화된 참여를 통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발현하거나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신체활동의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민체육진흥법과 유럽스포츠 협장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스포츠에 있어서는 그때마다의 개방된 개념을 선택하여야 하겠지만, 그 필수적인 요소로는 신체활동과 자기목적적인 요소, 경쟁이나 업적 내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 규칙과 조직형태의 존재가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스포츠의 필수요소

스포츠는 첫째, 신체적 활동 즉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e-sports³⁾라는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스포츠가 운동이라는 필수요소로 국민건강과 체력간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켜보면 e-sports는 염연한 의미에서 스포츠라고 할 수 없다. 경쟁, 유희적 관점에서 스포츠의 범위를 정한다면 e-sports 역시 스포츠의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활동으로 인하여 동반되는 안전사고와 같은 의무를 국가가 복지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제를 제정하는 목적에 따라 생각해 보면, 정신적 운동인 게임은 스포츠의 범주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포츠란 용어의 법규범적 해석과 법적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으로서 법률상 스포츠의 모든 정의를 획일적으로 통일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 역시 바둑, 체스, 장기 등을 엄밀히 말하여 스포츠에

3) <http://www.e-sports.or.kr>

e-sports는 국내에서는 1999년 말과 2000년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로서 널리 쓰기 시작한 것은 (사)21세기 프로게임협회(현재 한국e-sports협회가 2000년 2월 창립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e-sports의 협의의 의의는 게임대회 또는 리그를 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광의의 의의로는 게임을 이용한 대회뿐만 아니라 대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게임해설자, 방송국 등을 포함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의 게임문화와 이에 따른 신문화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⁴⁾ 비록 정신적 스포츠도 두뇌 스포츠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스포츠의 일반적 개념으로 포함하기는 곤란하다. 예외적으로 세법적인 의미에서 독일의 경우에는 체스협회가 스포츠 협회로 가입되어 스포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⁵⁾ 그러나 스포츠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체력 향상과 큰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상, 수영, 승마와 같이 신체적 활동이 그 기본요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스포츠의 요소 중 하나는 자기목적성이다. 스포츠를 향유하는 개인 자신이 목적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으로서 노동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스포츠가 자기목적성과 비생산성을 특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⁶⁾ 프로와 아마추어가 스포츠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데 일반인의 거부감이 없으므로 자기목적성만으로 충분하며, 생산성과 비생산성을 굳이 스포츠의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즉, 아마추어 스포츠를 향유하는 개인이든 프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개인이든 노동이라는 사역의 의미에서 벗어나 본인이 자기목적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이는 스포츠의 자기목적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자신의 체력증진과 자기목적적인 스포츠의 자기결정이 연관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셋째로 스포츠의 필수요소는 경쟁 즉 업적 내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Wettkampf und Leistungsstreben)이라고 할 수 있다.⁷⁾ 여기에서 “경쟁과 업적 성과”는 한 단어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에는 스포츠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경쟁이 있었든지 또는 경쟁이 없었던간에- 스포츠의 경쟁결과, 업적결과, 성과결과는 실제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확실한 스포츠 결과를 위한 “노력”的 과정에서 체력 향상이 기대되므로 이는 스포츠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에는 규칙과 조직형태(Vorhandensein von Regelung und Organisationsformen)가 존재하여야 한다.⁸⁾

4) Fritzweiler/Pfister/Summerer, Praxishndbuch Sportrecht, (1998), S. 3.

5) Gred Ketteler, Sport als Rechtsbegriff, SpuRt, 3/97 S. 74

6) Fritzweiler/Pfister/Summerer, a.a.O., S.3. : 자기목적의 관점은 스포츠에 있어서 아마추어 지위를 유지해온데 기인한다고 하고 있다.

7) Gerd Ketteler, a.a.O., S.74

8) Brenhard Pfister/Udo Steiner, Sportrecht von A-Z, (1995), S.18

스포츠는 일정한 룰을 세워두고 그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실행, 규칙의 재설정, 관철을 위해 조직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내 스포츠든 국제 스포츠든간에 규칙과 조직형태를 그 요소로 하게 된다.

(3) 스포츠와 유사개념

현행 법제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라는 개념을 실정법에서도 상당히 사용하고 있어 스포츠라는 단어의 법률적 사용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스포츠와 유사한 개념으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있다. 체육은 스포츠의 교육적 현상, 즉 교육목적을 가진 신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이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활동 외에도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여가,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경기활동 모두를 포함한다.⁹⁾ 스포츠가 위와 같은 필수적 요소를 지닌 사실적 측면 뿐 아니라 국민 전반이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국가의 스포츠복지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스포츠와 체육은 비록 신체활동이라는 그 출발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체육이 지·덕·체와 같은 교육의 측면에서 그 단어가 명명되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국가가 국민에게 “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스승이고 국민이 학생이라는 상하의 지휘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상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즉, 체육은 교육의 영역에서 지·덕·체의 균형적인 교육을 필요로 할 때 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스포츠라는 개념이 일반화되는 것 이 옳다고 본다.

현재 우리 법체계상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이라는 개념이 거의 스포츠의 필수요소를 감안한 개념이라고 볼 때,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 검정에 관한 규

9) 변해철, “체육(스포츠)분야에의 국가권력의 개념에 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28집 제3호(2000) 239면.

칙」등 스포츠의 중심에 서있는 법률명이 “체육”이라는 용어 대신 스포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스포츠법의 개념

(1) 스포츠법의 의의

스포츠법은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로서 스포츠국가법과 스포츠고유법으로 구분한다.¹⁰⁾

스포츠국가법은 말 그대로 국가가 스포츠를 진흥, 발전하는 그 주체로서 이를 위한 행정내용을 법률에 담은 것을 말한다. 사실 스포츠의 본래의 의의에서 출발하여 스포츠가 각 경기마다 자율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향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스포츠 내의 자치법규, 즉 스포츠고유법 분야에도 불공정한 경기진행, 여러 사람들의 이익의 충돌 등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되면 스포츠 고유법의 분야에만 이를 맡겨둘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스포츠 고유의 법규 외에도 이러한 분쟁시에 국가가 관여하게 되거나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과 용품 그리고 서비스 전반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포츠국가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실정법규 외에 스포츠국가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스포츠고유법은 스포츠 내에서 스포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고자 만들어진 스포츠 규칙, 심판규칙, 선수채용 등의 새로운 법률 해석적인 분야를 말한다. 이는 스포츠 국가법의 요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당사자간의 계약, 시설관리책임, 주의의무 등에 의한 민·형사 책임이 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책임론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는 스포츠 플레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법제의 제정이나 분쟁시 이를 조정하는 곳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문제인데 이 부분

10) 千葉正士, スポーツ法學から応用法學へ, 東海法學 第28号 (2002), 6頁

은 스포츠고유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규칙, 대회규정, 선수자격 등은 스포츠 자체규범으로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스포츠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는 스포츠의 영역에서 그 영향력에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스포츠는 자발적인 운영과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관찰시키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만든 규칙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처럼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영향력 있는 사적인 규범이 된다.¹¹⁾ 그리하여 스포츠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스포츠의 자유로운 영역 고유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 자치법의 범위를 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현행 민·형법의 해석으로라도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스포츠 국가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스포츠국가법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스포츠 자치법의 남용이 우려된다. 이는 관련법제의 구조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여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현행법의 진단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스포츠법의 체계와 가야 할 방향

스포츠법은 스포츠공법과 스포츠사법으로 분명히 나누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물론 현행법의 체계가 공법과 사법의 체계를 구분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법률은 스포츠공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스포츠사법으로 나눈다면 이를 구별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스포츠법은 스포츠라는 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가 때로는 사법적인 분야인 스포츠 플레이 규정 등과 같은 부분에도 이를 관여할 수 있고, 도핑규제와 같은 부분은 형사책임으로 약물관련규정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선수자격을 박탈시키는 등 선수규정인 사법규정에서 이를 규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에 관한한 공법과 사법이라는 획일적인 구별보다는 스포츠라는 특성을 가지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스포츠국가법이라 명명하고 스포츠를 향유하는 스포츠 경

11) Fritzweiler/Pfister/Summerer, Praxishndbuch Sportrecht, (1998), S. 5.

기자 등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스포츠 자치법규가 주축이 되는 범위에는 스포츠고유법이라 하여 이러한 분류가 적절하다.

스포츠법은 스포츠라는 특성 이전에 제·개정의 목적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¹²⁾을 비롯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한 법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 현행 스포츠법

(1) 서

스포츠 법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포츠법의 기본내용이 현행법제에서 충분히 제정·개정되어 그 목적에 맞게 특별법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와 함께 미래에 스포츠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이 현행법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스포츠 관련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항공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과 「하천법」, 「조세법」 등이 있다.

그밖의 각종 규정과 예규로는 「체육시설업자의 안전, 위생교육에 관한 규정」,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코스관리, 스키지도 및 지도요원 교육규정」, 「체육지도자 검정 연수에 관한 규칙」 등 상당히 많다.

스포츠 관련 법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법률제목과 법률내용상 스포츠와 관련되면 그 모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기본법 역할을 해온 「국민체육진흥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347면, 권영성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중 스포츠권을 예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는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의 지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익관리와 복지사업”이 그 주를 이루고 이것이 또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주요업무가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러한 체육국의 업무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률로서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체육기본법”的 흐름에 가깝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게 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으로 하여 입법되었다 하더라도 스포츠 내지 체육기본법이 본질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3장의 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4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현행 스포츠 법의 내용

1) 프로스포츠 지원

국민체육진흥법은 프로스포츠를 지원하는 내용을 전문체육을 지원하는 내용에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는 기존의 스포츠 개념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전문적인 조건-일정한 규칙의 구조, 경쟁적 경기, 신체적 활동과 계약-을 가지고 직업으로 하는 스포츠를 말한다.¹³⁾

오늘날 직업적 스포츠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모든 직업적 스포츠를 프로스포츠로 바로 명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¹⁴⁾

전문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두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

이 기구는 크게 국가대표선수와 청소년대표선수를 양성하고 지원하여 국제대회의 우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 Fritzweiler/Pfister/Summerer, a.a.O., S.2

14) 김상겸, “프로스포츠와 직업의 자유”, 스포츠와 법 제2권(2001), 400면

대한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 창립된 이후 국가대표선수와 청소년대표선수를 육성하여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체육시책을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1)전국 종합 체육대회, 학교체육의 전문화, (2)선수강화훈련,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육성, (3)국제체육교류와 국제종합대회, (4)국가대표선수 복지후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물적 시설 기반을 건립, 보수하여 확충하고 있다.¹⁵⁾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46년에 창설하여 1947년 IOC 총회에서 정식 가입국으로 인정받았다.

종래에는 대한 체육회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였다가 1964년 자체 기능강화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사단법인체로 재출발하였으나, 1968년부터 통합된 대한체육회의 산하 기구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¹⁶⁾

최근 2005년 9월 9일에 발표된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중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시행령 제2조의 국가대표선수의 정의를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라고 개정하여 장애인 전문체육인의 양성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업무로 일임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역시 최근 농아인 올림픽 대회, 장애인 올림픽 대회의 출전을 염두에 두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금지급규정에 의해 장애인올림픽과 농아인 올림픽에서 입상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해온 경기력 향상연구연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도 국민체육진흥법이 명문화할 예정에 있다.

15) <http://www.sports.or.kr>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사업안내 참조

16). 최근 다시 대한체육회와 대한 올림픽위원회의 분리문제가 스포츠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2005년 10월 13일자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대한체육회-KOC 분리·통합 놓고 결론 못내려” 참조).

이와 함께 장애인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도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장려하는 체육용구 및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내용개정안도 삽입했으며, 2005년 10월에 출범예정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수익사업(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사업,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그동안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온 선수들의 경기경력과 경기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우수선수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여 명실상부하게 장애인과 일반이 누구나의 전문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장벽을 없앰으로써 평등한 국가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된다.

2)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

국민체육진흥법상 분류하고 있는 “생활체육지원”의 명문조항은 “아마추어 스포츠”的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아마추어스포츠는 건강, 교육의 목적이나 여가선용 내지 친목 목적의 스포츠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스포츠의 상업화 바람은 스포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 대다수의 스포츠가 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 친목경기에 있어 대부분도 이러한 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금이 걸린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하여 선수들이 경쟁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인 스포츠라고 할 수는 없다.¹⁷⁾

이러한 아마추어 스포츠를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범위에 지방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직장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여가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시책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민의 일부분인 장애인 대다수를 견전한 체육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근거규정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2에서 두어 장애인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다.

17) Hortleider, Sport in der nachindustriellen Gesellschaft, (1978), S. 437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1991년 1월 8일에 설립하여 축구, 배드민턴, 육상,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원드서핑,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사격, 궁도, 스키, 스판스쿠버, 볼링, 택견, 생활체조, 야구, 합기도, 정구, 스퀸시, 농구, 종합무술, 승마, 하키,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국무도, 줄다리기, 골프, 당구, 인라인, 하키, Extreme games, 단학기공, 낚시, 검도,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수영, 라켓볼, 등산, 씨름, 우슈, 레크레이션 연합회 등이 가입하여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시도종목별연합회, 전국종목별연합회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연수하며(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관한규칙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국민들이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의 설치, 이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열기도 한다.

다만 생활체육의 경기종목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있어 개별 스포츠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책에 신중을 가하여야 할 뿐 아니라¹⁸⁾ 관련 시설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상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¹⁹⁾

그 밖에 생활체육사고대책을 위하여 국민생활체육공제회를 운영하여 스포츠공제보험(1년형 공제보험과 단기형공제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공제보험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동호인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상해보험과 배상책임, 위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예를 들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아마추어 스포츠 지도자들이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를 자격검정 또는 연수기간에 교육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19) 현재 해양, 항공은 거의 안전시설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부처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수산부가, 항공법은 건설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어 해당 스포츠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스포츠에 관한 복지행정을 하나의 행정부처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보험은 현재 동호회 중심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국민 개인의 보험 혜택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동호회 회원이 아닌 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해당법령이 요구될 뿐 아니라 보험수혜를 늘리고 사고시 혜택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넓히는 등 생활체육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활체육과 관련된 보험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보다 체육시설업자가 가입하는 방식으로 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 이를 해결하여 해당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료에서 이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험 이익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교육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중 주를 이루는 것이 “학교체육”인데 학교체육은 비록 체육이지만 청소년 스포츠와도 그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관광부가 관할하는 것은 전문체육인으로서의 청소년 지원일 뿐 대다수의 학교체육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 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수는 학교체육지원에 대해 운동경기부에 있다고 하여도 전문체육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학생들은 역시 학교체육정책에 기초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05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에서 발표한 「2005 학교체육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학생 자율체육활동의 활성화”, “학교체육시설, 교구 확보 및 효율적 관리” 3가지 항목이다. 특히 학교체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날 발표된 자료에는 “학교체육시설, 교구확보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지침이 들어 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24조 내지 제27조, 지방재정법 제75조(기부채납) 규정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기부채납), 제83조(기부재산의 사용허용)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기부에 조건을 달지 않고 기부를 받은 후(국유재산법 제9조) 등기 등 권리보존 조치를 하고 국,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때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 총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장은 기부채납 예정자와 사전 계약할 때 정규 체육수업시간에 이용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시간은 체육수업시간을 피할 것을 명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밖에도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기부채납자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이행촉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신규건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기존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승인에 따라 학교장이 계약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체육관리에 있어 학생행동을 벗어나는 일들을 지양하고 학교운동부 운영 및 체육특기생관리에 있어서 필수경비(훈련비, 출전비 등)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교회계로 편성 운영할 것과 운동부 운영에 따른 경비는 시도교육청 지원예산 및 관련단체 지원금, 각종 후원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편성, 집행하도록 하여 운동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또한 수업기간내의 합숙과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상시합숙을 초등학교는 금지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감독교육청에 반드시 훈련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입단추천이나 과열스카웃, 대회출전비 충당 및 학생신분을 벗어나는 행동을 억제하여 대회의 우승보다도 학교체육의 목적은 교육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이 한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전출입과 관련하여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문화관광부예규)」를 폐지하고(정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교육감동의조항삭제 및 폐지결정) 체육특기생의 상급학교 입학배정 및 전학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73조(중학교), 제89조(고등학교)에 의하게 한 후,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을 선수로 선발, 편입시킬 경우 지도자 또는 관리자가 선

수와 선수의 보호자에게 위 사실을 주지, 최대한 소속의 변경원인을 억제하고 전입학시 사전에 소속학교장 책임하에 충분히 협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선수등록 및 경기출전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경기가맹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육성 및 운영측면과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지침화하고 있다.

학교스포츠는 스포츠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교육의 의미에서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문화관광부의 체육국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가 해결하는 현행 법제가 옳다고 판단된다. 유년, 청소년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교육의 의미가 높으므로 교육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의 경기지도자 등의 스포츠지도자 자격 검정에 대한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만이라 볼 수 없고, 여전히 문화관광부의 소관 아래 스포츠법의 분야로 남겨져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 있어 체육 즉, 스포츠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같은 현실 때문에 스포츠의 청소년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은 탈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관광부는 교육으로서의 스포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학교스포츠 행정 이원화는 학교스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책무성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교육에 있어서 스포츠의 영역을 적극 배려하고 일반학생의 스포츠와 체육특기생의 스포츠로 스포츠 정책을 이원화하여 일반학생에게는 성장과 건강, 그리고 체력향상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고 체육특기생들의 장기를 적극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교육으로의 스포츠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스포츠를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스포츠지원사업과 수익사업

문화관광부 체육국은 현재 스포츠정책의 80%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⁰⁾ 그리하여 체육국은 직접 지원금, 보조금 형식으로 스포츠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지원사업으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감독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용구의 생산장려(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고시) 등을 하고 있으며, 토토, 스포츠복권,(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7조 2호) 경정 · 경륜으로(경정 · 경륜법) 얻게 된 수익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집중하여 올림픽휘장사업과(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3)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에 근거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사용을 경기장건립비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7)

5) 스포츠 시설

① 서

현재 스포츠 시설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 전반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스포츠 시설업과 관련한 법률은 스포츠 시설 건설업과 관련된 법률과 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관련된 법률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축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서 스포츠 관련 건물 건축, 건설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 관한 한 독립적인 스포츠 주무

20) 나머지 20%는 해양스포츠나 항공스포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벗어나는 범위의 스포츠에 관한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부서 행정기관이 스포츠 시설에 대해 일정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 시설 건설업에는 스포츠 시설 설치업과 관련된 법률과 경기장 시설 건설업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스포츠 시설 운영업에는 종목별 스포츠 시설 운영업 관련 법률, 리조트형 스포츠 시설업 관련 법률, 스포츠 시설 임대업과 관련된 법률 등의 총체적인 내용을 담는 스포츠 시설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② 스포츠시설 건설업 관련 법률

가. 스포츠시설 설치업 관련 법률

등록스포츠시설 설치업 관련 법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등의 종합체육시설 설치업 관련법규정(필수시설과 임의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신고스포츠시설 설치업 관련 법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시설 설치업 관련 법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타스포츠시설 설치업 관련 법규정	◦ 공통스포츠시설 설치업 관련 법규정(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와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유원지) 기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땅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나. 경기장시설 건설업 관련 법률

경기장시설 건설업 관련 법규정으로 현행 법조문상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운동장 등 종합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건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법규정으로서 수도법 제11조의3과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건축법시행령 제56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98조 등이 있다.

③ 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법률

가. 종목별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법률

등록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법규정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운영업
신고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법규정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시설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관련 법규정	스포츠시설업 종사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해상교통안전법, 공중위생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나. 리조트형 스포츠시설업 관련 법률

리조트형 스포츠시설업 관련 법규정은 스포츠시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시행령 제2조와 휴양콘도미니엄업 중 등록스포츠시설업에 속하는 시설의 회원모집에 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스포츠시설업 진흥정책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기간동안 국가는 민간스포츠시설업의 육성을 위해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체육시설 설치 운영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응자를 실시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기간동안에는 스포츠 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업 분야를 스포츠 산업 육성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삼았다.²¹⁾

2003년부터 시행된 제3차 5개년 계획은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목표로 스포츠시설업에 대해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시설업체의 기금응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국가 관리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민간 스포츠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과 편리함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 시설 전반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점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사고 중 스포츠 시설 사고는 시설 및 설비의 하자로 인해 심신의 재해가 일어나는 일인만큼 등록, 신고스포츠시설 외에도 스포츠의 전 범위 시설을 포괄적으로 보험을 의무화하는 규정 등 스포츠 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에 그 제정목적을 두고 망라할 수 있는 법이라야 할 것이다.

6) 국제대회지원

그동안 국제대회지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시적인 법률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등과 같은 한시법의 제정만이 있어왔다.²²⁾

21) 문화관광부(2001) “스포츠산업육성대책내부자료”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체육시설 경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육시설관리 운영개선방안과제로 삼고 있다.

22) 그동안의 국제대회 지원과 관련한 한시법으로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 · 올림픽대회운영규정」, 「서울아시아경기대회 ·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

이러한 국제대회지원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유는 그 협력에 있어서 올림픽과 서울아시아경기 대회 준비시기부터 국제스포츠대회의 지원에 따른 당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일정한 상시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가 없었다.

현재 한시법으로 사용해온 국제대회지원법률은 국제대회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여 이후 국제대회참가자에 대한 이중지원 문제와 참가자격의 사전정비 등의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과 연수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연수와 관련한 법규로는 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검정규정과 규칙,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이 있다.

학교스포츠 지도자인 체육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원연수라고 일컫는 현직 교사교육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사교육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일반연수, 특별연수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증대시켜 학생들의 학교스포츠에 기여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격취득이나 진급을 위한 점수획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형식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나마 교원연수의 기회도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²³⁾

또한 운동부 경기지도자들의 처우는 더욱 부족하여 일부 계약직 형태로 운용되거나 실제 특정경기우승만을 노리는 등의 근로계약상의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 양성사업은 1974년 경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코치아카데미와 1986년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체육연수원이 설립된 이후, 국가공인자격증과 국가비공인자격증을 통해 많은 스포츠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스포츠 서비스의 기본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자격종목의 불균형, 자격요건의 불균형, 과정별 연수의 복잡화, 자격요건의 성적인정 범위의 불합리성, 연수원 지

법』,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등이 있다.

23) 유승희, “학교체육실태조사및개선방안”, 체육과학연구원, (2001), 202면

정의 무원칙성, 자격검정 관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비공인 자격증은 법령의 비규제 문제, 자격검정과 자격관리의 주체가 개인 또는 민간단체인 점,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관리소홀, 자격의 질적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자격증 통용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현재 국가공인 체육지도자 자격증에는 경기지도자 1급, 2급 자격증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1급, 2급, 3급이 있다.

그리고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에는²⁴⁾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 한국마사지총연합회,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한국포크댄스협회, 한국체형발 관리총연합회등이 비공인 민간자격발급단체로 등록²⁵⁾되어 있다.

그 밖에도 스포츠댄스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케팅기획자 등 다양한 종류의 비공인 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관련 자격증에 대해 스포츠 자격증 보유자 전반에 걸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민간자격증 유지에 있어서도 안전교육시간 이수를 필수로 하는 등 스포츠 지도자 전반에 대한 소양을 기르는데 관련 특별 법률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최근의 입법안

1) 서

스포츠를 지원, 육성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민체육 진흥법이 스포츠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가는 스포츠지원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활동능력을 촉진하고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본체험을 매개하고 자유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전인적인 교육에 기여하고 서로 상이한 국민집단간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²⁶⁾ 그동안 상업화는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다. 놀랍도록 발전하는 스포츠 산업의 규모와 국민들

24) 19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은 제3장 제15조에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많은 자격증 발급단체가 이후 난립하게 되었고 겹중되지 않은 자격증도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5) <http://www.q-net.or.kr>

26) 독일 브레멘 스포츠진흥법 제1조(총칙)은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의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이를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배경이 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스포츠산업진흥법과 레저스포츠진흥법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래에서는 발의된 스포츠산업진흥법안과 레저스포츠진흥법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스포츠산업진흥법안」

①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발의배경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를 기업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전반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²⁷⁾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포츠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이 단일한 산업 구분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통계청의 신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제조업, 시설 및 교습 서비스업, 이벤트 및 여행업, 광고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보험업 등이 스포츠 산업에 포함된다.²⁸⁾

스포츠 산업은 체육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도 진흥시킬 필요가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정책은 신발, 자전거, 텐트, 낚시용구 등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산업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들 산업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더 이상 정부의 산업정책 대상으로 부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골프장, 스키장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산업진흥정책 대상이 아니라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으로 특별소비세 부과 등 정부 감독과 규제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²⁹⁾

27) 배재성, 한국 스포츠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04), 18면,

28) 배재성, 전개서, 20면, 일본 통상산업성의 분류는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스페어스산업으로 구분된다.

29) 박영옥,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체육과학연구원, (2004), 97면

이후 스포츠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으나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기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성장여건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및 지원조직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정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실정에 직면해 있었다.

현재 스포츠 산업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및 체육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다는 이유로서 스포츠 산업진흥법안이 2005년 5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②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내용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스포츠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스포츠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집적화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
- 바. 스포츠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개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사. 스포츠산업 진흥과 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한국스포츠산업진흥원과 상호협력하게 함(안 제16조)
자. 국가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이 시민구단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파견이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창단자본금을 출연 출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③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한계

가. 입법상의 한계

가) 산업관련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부분의 국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기술조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규모나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군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원지원법」 등이 있다.

최근 발의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은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진흥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발전법」상의 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별도 법률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³⁰⁾

30) 스포츠산업진흥법안 검토보고서(안민석의원발의안), 18면, 산업자원부는 다음과 같

현재 스포츠산업진흥기본법안은 스포츠 중장기 계획 중 하나인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의 계획수립으로 제정·발의된 법안이다. 그래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에 있어서의 별도 법률 제정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과 산업발전법 등 여타 체육, 산업관련법률과의 충돌 및 소관 부처 업무와의 조정 문제, 법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정안의 집행력은 담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조정을 거쳐야 할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발전법」, 「산업기술조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표법」,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산업분야인 ‘스포츠용품제조업 및 시설건설업’에 대한 것인데 「산업발전법」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 산업 지원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서는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설치업 및 체육서비스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체육시설업의 설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은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다.

첫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은 전후방산업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조직이 아닌 상업 및 공업 분야의 육성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 및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체육용구 등의 생산장려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업무 소관부처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스포츠용품을 비롯한 전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독자적인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인증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외공신력의 확보가 어렵고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 임의인증을 통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부처별로 별개의 인증제를 확대할 경우 부실인증의 원인으로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의 육성정책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WTO협정의 위반으로 인한 통상마찰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

있다. 하지만 산업 자원부는 ‘산업발전법’상 ‘스포츠 용품제조업 및 시설 건설업’은 산업자원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스포츠산업지원법위에서 제외할 필요를 들고 있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 함양을 위한 문화적 기반의 육성이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여 국민체육 진흥법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및 산업자원부 소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및 산업자원부의 직제(대통령령) 규정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부 직제 제15조는 체육국의 소관업무의 하나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체 및 단체의 육성, 지원 및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은 이에 근거한 문화관광부의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조치 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력의 낭비 및 소관 업무부처의 혼란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스포츠 산업법제는 크게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법률로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만을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담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므로 반드시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체육 관련 법률과의 관계

현재 스포츠산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체육 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되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 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 제16조에서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설치업 및 체육서비스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체육시설업의 설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하여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스포츠 진흥산업 대상의 시설은 정책상 특별법인 스포츠 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지만, 여전히 일반 스포츠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 신고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소 결

입법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스포츠 산업진흥법제상 스포츠 산업 중 일부만을 규정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절름발이 입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입법상 범위를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전범위로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 통과에 앞서 해결해야 할 스포츠 진흥을 위한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스포츠 산업진흥법은 스포츠 산업관련자와 스포츠를 하는 국민이 편리하게 규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를 집중 입법하여 국가가 체계적,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서 만들어지는 법제이다.

그런데 만일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시설건설업을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내용에서 제외한다면 이 법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나. 집행상의 한계

가) 상당한 예산의 필요성

문화관광부는 스포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예산지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스포츠 산업지원, 육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못해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화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기법, 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기술상으로는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선택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일반 체육 분야의 진흥과 기금조성, 체육단체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미흡하므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은 적절한 선택의 입법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예술분야에서도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과 산업영역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이원화되어 있듯이 기초체육 진흥 분야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 산업 진흥분야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이원화되어 입법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집행하기에는 이러한 기초스포츠 진흥과 스포츠산업 진흥이라는 과제의 분과로 인한 여러 가지 소요예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제7조의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와 “한국스포츠산업진흥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的 설립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나 조직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당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것이다.³¹⁾

이는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추진해야 할 업무에 드는 소요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귀착되지 않을 수 없다.

31) 안민석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첨부된 예산명세서를 보면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당해연도에는 3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2010년까지 약 119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요비용 89.8%가(1070억원) 한국스포츠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것으로 추산된다.

비록 제정안 제14조5항은 한국스포츠산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스포츠산업 부문에 대한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규모가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현실을 감안할 때 동법안의 집행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한국스포츠산업진흥원 등 신설되는 조직의 규모 축소 또는 기존 조직 및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소요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스포츠산업 진흥재원 확충 차원에서 “경륜, 경정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배분금(수익금의 17.5%)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표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그 소요예산집행근거를 가져올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예산의 출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문제이므로 해당기관의 효율성을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용어 범위 확정화의 필요성

현재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은 개념간의 혼란이 없도록 명시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는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의 “스포츠”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이란 개념간의 간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야만 스포츠산업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다. 안 제2조 제1호는 스포츠산업 범위가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시설건설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규정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단순한 개념 정의의 의미를 넘어 동법의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업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스포츠산업의 분류 및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스포츠용품제조업”은 “스포츠용품의 제조에 관련된 산업”으로 “스포츠시설건설업”은 “경기장 건설과 스포츠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는 동어 반복적인 개념 정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관련 산업이라는 용어가 확실시되어야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시행령에 유보하여 법률 통과후에 제정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상의 법률간의 범위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 산업 범위 분류에 있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산업분류’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및 ‘해외에서 사용되는 북미표준산업분류표상의 스포츠산업 분류방법’ 등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업의 지표를 삼기 위한 분류로는 스포츠 산업 진흥

을 위한 스포츠산업의 영역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스포츠산업 분류기준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스포츠 산업의 지원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사업자단체, 프로구단 등의 용어 사용과 기준을 정해 난립을 막고 적절한 인가를 통해서만 설치, 운영하여 국민 생활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독자적 품질인증제의 문제점

스포츠용품제조업 및 시설건설업 등 관련 법률의 부처간 조정이 합의되어 성공적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이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률을 제정,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업무 소관 부처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에서 스포츠용품을 비롯한 전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제품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체계적인 관리와 인증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스포츠산업, 즉,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세 분야 전반에 있어 품질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들의 부담으로 부실인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3)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

①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의 발의 배경

여가에 대한 개념이 재충전의 기회로 재해석되면서 주5일제 근무 시대 등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이 2005년 10월 20일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레저스포츠는 “레저활동으로서의 스포츠”로 여가를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신체활동성, 경쟁성이 있는 스포츠라면 모두 레저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레저스포츠는 지상스포츠, 수상, 수중스포츠, 항공스포츠 모두 레저활동으로서의 스포츠이므로 스포츠를 관리, 지원, 육성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의 내용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레저스포츠업의 신고(허가, 인가, 등록을 포함한다),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규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충돌을 방지함(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의 설치나 레저스포츠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레저스포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8조)
- 라.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레저스포츠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레저스포츠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내에 레저스포츠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또는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안전검사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과 안전검사업무의 대행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20조)

- 사. 레저스포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동시에 안전검사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아.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소재 및 부품의 기술개발을 장려,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레저스포츠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시설 및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차. 안전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레저스포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영업폐쇄, 청문 및 벌칙과 과태료 규정 등을 명시함(안 제26조 내지 제29조)

③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의 한계

레저스포츠는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 2 “여가체육”이란 용어와 이 법안의 제목과는 혼란이 생긴다.

실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스포츠관계법 체제 아래에서는 레저스포츠가 다른 체육시책에 비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거나 이를 급속히 진흥시키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늘어나는 레저스포츠의 전영역에 대한 시책을 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레저스포츠의 본격적인 진흥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점진적인 형태로의 법률체계를 재정립하여 레저스포츠진흥조항을 따로 둘 것이 요구된다.

이로 인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불가피하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체육시설업을 ‘등록시설업’과 ‘신

고시설업'으로 구분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새로운 체육시설업이 생겨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를 현행의 레저스포츠 종목인 즉, 인공암장, 익스트림 게임장, 서바이벌 게임장, 수상스키장, 원드 서핑장, 활공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레저스포츠시설업으로 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체육시설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만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설치나 장비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안전검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안전검사란 안전관리요원배치, 사업자의 안전조치, 보험가입, 수질관리 등 안전 의무사항 전반을 말한다.

그밖에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상의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을 레저스포츠 종목까지 확대하여 레저스포츠의 원활한 보급과 스포츠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제거하는 전문지도자가 양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건축법 및 도시공원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산림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의 법률도 함께 개정·입법되어야 한다.

그러나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레저스포츠의 전반에 걸친 육성을 통하여 개별법 차원에서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나 「관광진흥법」상 활공장 관련 조문들은 자동적으로 본법의 구속력을 받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집행시에 있어서는 스포츠로 인해 관련 산업이 업무상 이중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공시하고 지침을 만드는 등 행정부처간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항공법상 항공시설과 항공스포츠에 있어서 레저스포츠시설이 동시 사용될 경우, 어느 관할의 안전관리 단속을 받아야 하는지 어

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행정력낭비가 없도록 미리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현행 스포츠법의 한계

1. 서

우리 스포츠 법제는 현행 헌법에서 “스포츠”란 용어를 명문으로 기본권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시작이 있다. 또 법률용어로 ‘스포츠’와 ‘체육’을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스포츠법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헌법상 스포츠권에 대한 명문규정의 부존재, 둘째, 스포츠와 체육간의 법률상 용어 혼란과 체계적이지 못한 현행 스포츠 법제의 구조, 셋째, 스포츠 관련 소관부서간 업무의 통합 등 스포츠조직의 과제 등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그밖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위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한다.

2. 현행 스포츠법의 한계

(1) 헌법상 스포츠권에 대한 명문규정의 부존재

1) 서

스포츠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권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아직 현행법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가 체육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스포츠와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에 준하여 스포츠 권리의 향유하고 있다고 개념화할 뿐이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현실적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높아진 국민 수준과 함께 여가를 안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이를 진흥하고 그와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복지행정의 대상이다. 이러한 스포츠가 진흥되고 국제화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스

포츠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헌법적 차원에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生存權)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헌법상 명문화 규정이 없는 스포츠는 다른 기본권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기본권 규정들의 해석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게 된다.

환경권이 1960년 이후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자, 헌법의 주제가 되어 결국 헌법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 제35조 환경권이란 명문화 규정으로 입법화된 것처럼 스포츠도 사회적, 문화적 발전의 관점에서 문화헌법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³²⁾

2) 스포츠권의 헌법상 명문화의 필요성

이제 스포츠는 스포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법의 개념 정립과 그 범위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를 규범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마련할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스포츠는 근대 이후 국가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체나 협회, 또는 학교를 통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스포츠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으로 인한 사적 자치의 영역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³³⁾

그러나 실제 스포츠를 하게 되는 사람은 단지 그 자신이 스포츠의 종류를 처음 선택하는 경우에만 자기 결정권을 가질 뿐이다. 참여 이후의 스포츠는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스포츠규칙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스포츠의 자치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조정이 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는 더 이상 자치권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관여를 통한 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Steiner, Kulturpflege, in : HdbStR III, 1988, S. 1257ff ; Klose, Die Rolle des Sports bei der Europäischen Einigung, 1989, S. 66f

33)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스포츠와 법 창간호(2000), 64면

이는 헌법국가에 있어 스포츠의 법적 문제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헌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스포츠에 대한 권리와 스포츠법의 헌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 필요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⁴⁾

국민이 스포츠 복지행정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의 기본권 명문화와 이에 따른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정비는 현행 스포츠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3) 각국의 입법

헌법에서 스포츠권을 언급하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스포츠에 대하여 그리스헌법은 스포츠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³⁵⁾ 1970년대 이미 개인적·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장에서 스포츠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둔 것이다. 그리스 헌법 제16조는 제2항에서 “교육은 국가의 기본 과제이며, 그리스인의 윤리적·정신적·직업적, 그리고 신체적 교육을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 제9항에는 “스포츠는 국가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스포츠 협회에 속하는 모든 스포츠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한다. 법률은 재정적 지원을 받은 협회의 목적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보장된 재정지원의 적용을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16조 제9항을 살펴보면 스포츠를 국가의 보호와 통제 아래 둘으로써 국가가 수혜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권의 기본정신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조항이라고 보기是很 어렵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스포츠 조직이 국가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을 수는 있으나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본권으로서 이와 같은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역시 1976/1982년 헌법 제64조 국민의 건강권 제2항에서 “건강보호권은 학교에서 신체적·스포츠적 활동의 촉진을 통하여 또한 국

34) Häberle, Die Entwicklungsländer im Prozeß der Textstufendifferenzierung des Verfassungsstaates, in : Rechtsvergleichung im Kraftfeld des Verfassungsstaates, 1992, S. 791ff.

35) Häberle, Sport als Theme neuerer verfassungsstaatlicher Verfassungen, in : FS für Thieme, 1993, S. 26f.

민의 건강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보장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70조에도 청소년의 권리로서 스포츠 여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9조에는 “국민 개개인은 스포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의무로서 학교와 스포츠공동체의 협력 아래에서 스포츠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진정한 스포츠권의 기본권 명문화 조항은 포르투갈 1976/1982년 헌법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역시 1978년 헌법 제43조에 건강권과 공권력의 스포츠 육성과 여가선용을 규정하고, 제48조에는 청소년의 권리 중 스포츠를 언급하고 있으며 여가활용과 스포츠를 연계시켜 국가적 육성과제로서 스포츠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스위스의 연방헌법 제58d조, 1983년 네덜란드 헌법, 1982년 터키 헌법 제58조, 1974년 구 동독 헌법, 알제리 헌법 제67조 제2항, 1971년 불가리아 헌법 제47조 제2항, 제52조 제1항, 1976년 알바니아 헌법 제36조, 1975년 루마니아 헌법 제27조 제2항, 1976년 폴란드헌법 제84조 제2항, 1972년 북한헌법 제47조에도 스포츠에 대한 헌법상 언급이 있다.³⁶⁾

4) 헌법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헌법적 권리로서 스포츠권은 “스포츠인과 스포츠 단체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스포츠권이 기본권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되어 이를 원칙적으로 헌법에 명문 규정화한다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본권의 내용이 구성되어 스포츠 관련 입법을 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현행 우리 헌법상 외국에서와 같은 스포츠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스포츠권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도 스포츠권을 확립하는데 있어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스포츠권의 헌법적 해석으로부터 스포츠인의 기본권과 스포츠 단체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³⁷⁾

36) 김상겸, 전계논문(“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70면

37) 변해철, 전계논문, 11.12면

① 스포츠인의 기본권

스포츠인의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스포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하고 국가는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스포츠인 중 프로스포츠인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조항의 보호범위에는 이중직업과 부직의 경우도 포함되고 정식직업을 얻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훈련과정 중의 신분이나 아마추어로서 후에 프로를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³⁸⁾

그밖에도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거나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도 스포츠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② 스포츠단체의 기본권

스포츠단체의 기본권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사의 자유에 있어 결사는 다수의 자연인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와 결사에의 가입이나 잔류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³⁹⁾

이와 같은 스포츠의 헌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헌법적 해석으로 구체화하려는 목적은 헌법 질서상 다른 기본권과 충돌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이다. 스포츠권은 특히 다른 기본권 중 환경권, 경제적 기본권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2) 스포츠 입법의 비체계성

현행 스포츠 법은 변화하고 있는 스포츠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8) 김상겸, 전개논문("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77면

39)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9, 467~468면

1) 법률 용어의 비통일적 사용

첫 번째 한계점은 법률용어의 통일적이지 못한 사용이다. “스포츠”와 “체육”에 관한 용어의 혼재된 사용으로 인해 32개의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⁴⁰⁾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법의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담고 있어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다. 그밖에도 여가체육, 레저체육, 생활체육 등 혼재하고 있는 유사개념간의 통합 또는 정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도 “체육”이라는 용어가 그 의미가 포괄적인 “스포츠”보다 수용범위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언어의 혼란이 없으려면 ‘스포츠(Sports)’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에 있어 기본용어의 혼재는 공무원들이 여러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해당 소관부서간의 분쟁을 가져오고 국민들도 혼란스럽게 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는 국가나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과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건전한 시행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가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경기, 경마·경륜·경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하여 여가체육에 대한 제2항이 예시조항인지 열거조항인지 또는 유사개념과 반대개념의 상반된 나열인지 입법자의 제정의지를 알기 어려운 규정이다. 그밖에도 동조 제2항은 단지 ‘프로경기의 육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프로스포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2) 스포츠 법률 목적에 대한 일관성 부족

스포츠 관련 법률의 목적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 스포츠 관련법들은 당시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마다 제정되었지만, 현행 법률과의 조화를

40) 각주 1)을 참조할 것

고려하거나 원칙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1980년대 이후 프로스포츠가 상당히 발전한 것에 비해 관련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한시법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대회를 앞두고 생겼다 사라지는 등 국제대회지원에 있어 체계가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 전반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고 여겨진다.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국가는 이를 전제로 제정 의지를 가지고 국가 시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지도자검정및연수에관한규칙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닌 법률로서 제정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재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당자격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의무 등 스포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법률로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청소년 스포츠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경륜·경정법과 같은 현실적으로 사행성을 띠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의 접근을 저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간의 충돌을 막아야 할 것이다.⁴¹⁾

3) 스포츠 지원, 육성상의 불평등 문제의 내재

스포츠의 육성과 지원이 국가의 과제라는 것은 스포츠 복지행정상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형태가 다양하고, 보조금과 지원금을 통한 지원시에는 이중지원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한시적인 대회의 특별법 등이 있다.

41) 김상겸,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스포츠와 법*, 제4권(2003), 227면, 경륜·경정법은 제1조 목적에서 경륜과 경정이 국민의 여가선용과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제2조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륜, 경정법이 가지는 사행성을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는 국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경비를 보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한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도 제18조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제20조의 사업을 위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대표 선수 및 우수 스포츠 선수에 대한 지원, 스포츠 단체에 대한 보조,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 공무원 및 직장체육 등의 지원, 스포츠 의학 및 과학의 지원, 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스포츠 용구 개발, 제조 등에 대한 자금 응자, 각종 스포츠 대회의 개최, 스포츠의 국제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고를 통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스포츠 활동 중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요망되는 2002년 월드컵 대회 개최 및 아시아 경기대회개최의 지원을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지원금 외에 보조금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스포츠 행정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본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스포츠 선수·스포츠 단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중복지원이나 불평등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비효율적 스포츠 행정업무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안전사고에 관한 법률은 ‘수상레저안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항공법’, ‘한국마사회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국토이용관리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건축법’, ‘하천법’, ‘조세법’ 등 여러 법제에 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재 항공상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항공정책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스포츠용품안전사고는 산업자원부,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 체육국,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수산부, 경마와 관련된 부분은 농림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칭)스포츠안전 및 스포츠안전관련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통일하면 주무부서의 업무상 중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국민의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스포츠 조직의 업무분담 투명화

1) 스포츠 조직의 의의

스포츠 조직(Sport Organization)이란 스포츠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조직은 각 조직마다 설정한 목표를 지향하게 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조직과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스포츠 조직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의 주요요소를 갖추게 된다.

첫째, 스포츠 산업에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 스포츠 조직과 은행, 제약 회사, 자동차 판매점 등 다른 조직과의 차이점은 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스포츠 산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모든 스포츠 조직은 조직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목표 지향적이다. 모든 스포츠 조직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 그 목표는 전국대회 우승일 수도 있고, 이윤추구일 수도 있으며 짧은 선수의 발굴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는 데 비해 대부분 스포츠 조직은 수익 창출 목표 외에도 메달을 따는 것,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 해당스포츠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일 등과 같은 공익성 목표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넷째, 구조적 활동 체계가 필요하다. 스포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필요로 한다. 어떤 스포츠 조직이든 마케팅, 제품 서비스 개발,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하부조직을 그 스포츠 조직의 특성에 맞는 구조로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조직은 그 조직의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개 돈이나 지위, 또는 소속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서 조직의 동의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스포츠의 조직은 다양하다. 추구하는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리복과 같은 기업조직은 소유자와 주주들의 이익이 주목적이지만 한국야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등은 비영리 혹은 자발적인 단체로서 회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유입되는 자금은 조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또 한국마사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축산발전이나 국민체육진흥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 형태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지역자치단체나 정부에 스포츠 조직이 소속되기도 하며 대형 에이전트에 의해 조정되기도 한다. IOC 같은 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나이키 같은 조직은 수천명의 직원을 두고 치밀한 전략을 기초로 해서 운영된다. 이와 반대로 동네 스포츠 센터나 수영장 등은 소수의 인원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영된다.

2) 국가의 스포츠 조직

① 국가의 스포츠 조직의 필요성

현재 스포츠 조직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의 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프로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국”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적은 규모의 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선수와 스포츠 단체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해결하거나, 국가위상의 측면에서도 스포츠 선수에 대한 징계를 재심하기 위한 기구 등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

이고 장기적으로는 스포츠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스포츠 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스포츠 조직의 설립·운영의 목적은 스포츠 선수와 단체의 기본권을 위해 다양한 국가적 지원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음은 물론이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여는 기본적으로 진흥행정 측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발의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해 진흥원이 생긴다면 상당한 부분의 스포츠 국가조직의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스포츠 조직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으나 프로 스포츠조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다.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스포츠 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체계화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 산하기관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체육과학연구원이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발행 등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대회를 지원하고 대한체육회 등 주요 스포츠 국가 조직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그밖에도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용품인증 사업 등을 하여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도 기여한 바 있으나 사실 미약하다.

또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체력센터를 운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국민체육센터를 전국으로 보급하는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장에 잔디, 우레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 체육과학연구, 청소년건전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③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1920년 7월 13일에 창립되었다.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국민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와 청소년대표선수와 같은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태릉선수촌과 같은 전문경기장들을 위한 경기장과 연습장, 숙소들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53개 가맹경기단체, 16개 시도지부, 14개 해외지부를 가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활동의 범국민화,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를 통할 지도, 민족 문화발전에 기여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통합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엘리트체육의 국제대회지원과 전문스포츠인 양성 업무만을 대한 체육회가 관할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⁴²⁾

④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프로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 대상, 내용, 추진해야 할 행정방향이 상이하다.

따라서 엘리트 체육과 아마추어 스포츠의 행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엘리트체육 조직에서 생활체육까지 병행할 경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KOC와 엘리트 체육을 함께 관장해온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을 주도할 수 없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대한체육회의 위와 같은 프로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행정적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현

42) 한겨레 신문 2005년 10월 11일, “엘리트 중심 대한체육회 개혁하자”

재 84개 종목에 5만여 개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을 지원하고 육성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국민체육활동 참여율을 33.4%까지 끌어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생활체육의 중심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96년 “국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거,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명목상 남아 있던 생활 체육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엘리트 체육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생활체육의 새로운 물결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체육발전 구조에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완전히 분리하여 발전시켜 온 추진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분야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연계와 협력을 이루지 못하는 운영구조상의 문제가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

⑤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은 1980년 설립 이래 한국체육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999년 1월 편입된 유일한 정부 산하 체육연구기관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은 전문체육연구와 생활체육 연구 기능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고 국민체력 증진 및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도하며, 전문 체육 인력을 육성하는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스포츠 산업의 육성, 지원 및 스포츠산업 정책 연구를 통하여 한국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⑥ 분쟁조정 해결기구의 필요성

현재 스포츠 분쟁의 해결을 위한 헌법상의 권리구제로는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

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권에서 특히 司法節次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다.⁴³⁾

그러나 스포츠단체는 私法的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조직은 세계적이고 내부적으로 통일된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어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스포츠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이때 스포츠내부의 분쟁해결을 위한 근거는 스포츠자치권의 활동에 의한 스포츠자치규칙이 근거가 된다. 스포츠규칙은 스포츠조직의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단계화되어 있으며 국제경기에 있어서는 국제스포츠규칙이 적용된다.⁴⁴⁾

법률분쟁의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은 권리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의 과제이며 의무이다.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다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거나 또는 처음부터 사법절차를 요구한다면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는 실정법규정에 따라 사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판청구권이나 국가의 각종 청구권은 헌법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사법보장의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특수한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스포츠분쟁은 그 종류에 따라 국가법이 개입할 여지가 결정된다. 스포츠경기에서는 그 종류별로 스포츠경기 규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실정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스포츠경기 외 스포츠선수나 스포츠단체간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대부분 실정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 소송법상 절차를 밟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부담은 상당히 크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포츠선수의 경우 활동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권리보호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43) 김상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 제5권(2004), 27면

44) 김상겸, 상계논문, 28~29면

이에 따라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는 ADR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정, 중재 또는 협상이 있으며 사법재판과 달리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므로 스포츠분쟁해결에 적절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스포츠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스포츠 중재재판소 같은 기구 설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⁴⁵⁾

3) 프로 스포츠 단체와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

국가상의 스포츠 조직 외에도 스포츠 조직은 얼마든지 개인들이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프로 스포츠 단체와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가 있다.

프로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스포츠인과 관련된 단체로서 현재 많은 사업자 단체의 난립과 대표성 확보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어디에도 프로 스포츠 단체와 관련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프로 스포츠 단체의 설립 요건 시 사업자 단체의 난립이나 대표성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보다 “허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제2조 제4호를 살펴보면 “프로구단”을 “프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에 의해 특정지역을 연고지로 하여 운동하는 운동경기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대해 검토해보면 “프로구단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 구기 종목의 프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운동 경기부”를 의미하므로 씨름, 복싱 등 비구기 종목을 포함할 수 있는가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프로구단을 프로경기에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경기를 프로경기로 규정할 것인지 프로선수로 등록된 자가 행하는 운동경기를 프로경기로 규정할 것인지 모호하여 프로경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프로구단의 성립요건으로 “지역연고제”를 명시하고 있어 프로구단과 지역연고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구단을

45) 김상겸, 전개논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30~31면

창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건은 아니라는 점에서⁴⁶⁾ 프로구단에 대한 용어 정의를 일반화하여야 할 것이다.

스포츠 단체에는 ① 협회, ②구단, 팀 ③위원회 ④스포츠에이전트 등이 있다. 현재 스포츠 단체는 농구, 야구, 축구, 배구 등 인기종목에만 스포츠 단체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연합회 형식의 단체로 살펴보면, 탁구, 테니스, 궁도 등 프로 스포츠의 가능성으로 전환이 가능성을 가진 스포츠 단체들로 보여진다.

4) 소 결

각 부처마다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법률의 산재는 스포츠 관련법의 조직 구성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스포츠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담당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이 스포츠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된다면, 스포츠에 관한 독립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아마추어 스포츠 연맹들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역시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들의 공제 보험을 가입시키는 등 사업을 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단으로 국가와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며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과 경정사업의 주체로서, 한국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특수법인이다. 대한체육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조직의 목적이 불분명해진 것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스포츠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은 스포츠 복지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예를 들어 프로씨름, 프로복싱 등은 지역연고를 두지 아니한다.

3.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

스포츠법은 스포츠 정책과 스포츠 행정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국민들이 복지행정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나 스포츠에 대한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나 스포츠 관련법의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 있는 스포츠 정책과 스포츠 행정에 의해 스포츠의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의 확립이 요구되고 이에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은 변화하고 있는 스포츠 환경 속에서 스포츠 관련법들을 정비하여 개선하는 것이 옳은지, 기존의 법령들을 통폐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지의 행정적 효율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 기본법이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이며 우선 스포츠 기본법에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부여하여야 할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정하는 일은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범위 및 법적 성격 등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우선 외국의 스포츠관련 법규정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 3 장 각국 스포츠 입법 현황

제 1 절 프랑스

1. 서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법률이 1940년부터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스포츠 법 발전이 계속되어 왔다. 그중 1984년 7월 16일 제84-610호 법률 「신체 · 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위 스포츠기본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프랑스 스포츠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7월 6일 제2000-627호 법률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⁴⁷⁾ 프랑스는 이외에도 1989년 “스포츠경기 및 스포츠행사에 있어서 도핑물질의 사용 예방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밖에도 스포츠폭력에 대해서 1985년 8월 19일 유럽협약, 반도핑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16일의 유럽평의회협약 등이 프랑스 스포츠법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아래에서는 「신체 · 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프랑스 스포츠법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를 하기로 한다.

이 법은 국민의 스포츠권, 교육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 단체, 국가가 프로스포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의 간섭, 스포츠연맹과 올림픽 스포츠위원회, 직장에서의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 스포츠지도자 자격과 스포츠 시설의 안전, 보험 등 스포츠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7) 1984년 제84-610호 법률은 1987년(제87-979), 1992년(제92-652호), 2000년(제2000-627호)에 직접적으로 개정되었고,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개정되고 다른 법률에 편입되어 삭제되었다. 그리고 2002년(제2002-1578호)에 제43조가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관련법제의 통일적 개선방향이라는 목적으로 스포츠관련법제가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2000년(제2000-627호)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995년 이전 상황에 대하여는 齊藤健司, フランスのスポーツ基本法, 季刊 教育法 第104号(1995. 12), 78頁이하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www.sports.gouv.fr/sport/L84consolide.pdf 참조

2.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 국민의 스포츠권에 관한 규정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스포츠법이라 표기함)」은 1984년 제정당시부터 이미 제1조에서 “신체·스포츠 활동은 모든 사람의 정신의 균형, 건강 및 개화의 중요한 요인을 구성한다.”라고 하면서 “신체적 및 스포츠 활동은 교육, 문화 및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소로서 성별, 연령, 사회적 조건이 어떠하든 각자의 권리”라고 하여 스포츠권을 향유함에 있어 평등성을 선언하고 있었다. 2000년 개정된 스포츠법 제1조에서도 “신체·스포츠 활동을 교육, 문화, 통합 및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또한 건강에도 기여한다.”라고 하면서 “신체·스포츠 활동의 진흥과 발전은 각인의 권리”라 하여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법 제1조에서는 “국가, 지역단체 및 지역단체의 집합, 스포츠 협회, 연맹, 기업 그리고 학교들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협력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으로서의 스포츠

프랑스는 학교스포츠에 대해서 “신체 및 스포츠 교육”이라는 개념 아래 스포츠법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우선 제2조는 체육 및 중·고와 대학의 스포츠가 교육제도의 쇄신, 학교교육의 좌절방지 및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신체·스포츠 교육의 교육과정을 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3조), 이러한 신체·스포츠교육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중등교육 및 기술교육 기관에서 행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각 교원이, 중등교육시설에서는 전문 교원이 그 교육을 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1984년 1월 26일, 제84-52호)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직원들의 신체 및 스포츠활동을 조직·계발한다(제5조). 그리고 장

애자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다양한 형태의 체육 또는 스포츠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3) 에이전트에 관한 규정

2000년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프랑스 스포츠법에서는 스포츠에이전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 업무를 하는 자는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행법은 이러한 에이전트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여 licence 요건과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현행법 제7조는 “보수를 받으며, 우연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적인 자격을 행사하거나 스포츠 활동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것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는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포츠 에이전트의 정식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센스는 연맹에 의하여 3년 기간으로 교부되며 이 기간이 끝났을 때에 다시 갱신된다. 연맹에 의한 스포츠 에이전트의 라이센스 부여, 교부, 철회의 방법은 참사원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리고 철회와 교부, 갱신, 거부 등의 연맹의 행위는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스포츠를 담당하는 장관에 대하여 통지된 날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 행정재판제도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 에이전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특히 과거에 스포츠와 관련된 기관에서 직책을 수행한 경우 스포츠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 규정화하여 스포츠에 대한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하여 범죄기록보고서에 기록된 경우 역시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교부받을 수 없어서 라이센스에 있어 준법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생활에 합의한 국가 소속 국민에 의한 스포츠 에이전트 활동”에 대하여는 본 조항의 도덕성 조건을 준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기도 하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같은 계약에서 당사자들 중 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할 수 있고(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당사자들은 스포츠 에이전트를 위임하며 보수를 줄 수 있다. 위임시에는 보수 총액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중개인이 받는 보수 총액이 계약 총액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프로 스포츠 계약에 있어 선수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고 하여 이 조항이 강행규정의 효력을 가짐을 규정하였다.

(4) 스포츠행사 등의 영업권

프랑스 스포츠법 18-1조 내지 제18-4조에서는 스포츠 행사 또는 경기 주최시의 영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영업권은 스포츠 행사 또는 운동경기 행사의 조직자인 스포츠 연맹에 속하며, 이 영업권의 소유자는 이 행사 또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행사 또는 경기의 영업권이 방송기관에 양도되는 경우, 다른 방송기관에 의한 시청자 정보제공을 방해하지 않을 것(제18-2조)과 영업권 양수인인 기관이 그 스포츠행사 또는 경기행사의 발췌부분의 생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송기관에 의한 당해 행사 또는 경기의 방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제 18-3조), 이 행사 또는 경기의 조직자나 이 영업권의 양수인이 저널리스트의 시설출입에 대해 방해하지 않을 것(제18-4조)등이 정해져 있다. 스포츠 행사 및 그 방송에 의해 얻는 이익이 증대함에 따라 그 영업권 및 방영권에 관한 규정을 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5) 직장 스포츠에 관한 규정

프랑스 스포츠법 제20조는 우선 “직장에서의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의 조직화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스포츠 활동의 촉진을 조성하고 기업 내의 스포츠 비영리사단에 대하여 자금제공을 하는 단체로서 기업위원회(*comité d'entreprise*)를 두게 하고 있다⁴⁸⁾. 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

48) 이 기업위원회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업에

대표와 기업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체 및 스포츠활동에 관한 기업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기업체 직원의 신체 및 스포츠활동은 장려되고 이들 기관의 업무집행과 조직은 스포츠협회에 위임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내에서의 신체·스포츠활동을 조직화하는 기구를 두고, 직업상 합목적성이 있는 신체활동은 기업체내에서의 직업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조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1조), 기업에서의 스포츠 활동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스포츠 지도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가 행하여지게 하였다.(제23조) 프랑스는 Sports for All 의 입장에서 학교, 지역만이 아닌 직장에서의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6) 스포츠 단체에 관한 규정

프랑스에서 스포츠 단체는 1901년 7월 1일의 법률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단⁴⁹⁾의 형태로 설립되고(제7조) 그것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8조). 이때 승인(agréement)은 특히 단체의 민주화 작용, 업무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단체를 지도하는 감독수단에 남·여들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법규정이 있는지 등에 근거한다 (2000년 개정법에 추가)고 되어 있다.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또는 스포츠 연맹 등 스포츠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법률상 이 스포츠비영리사단으로서 설립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에 스포츠비영리사단이라는 법인 형태로 그 법적 기반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 스포츠법 제11조에서는 스포츠 비영리사단이 명령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액의 수입을 얻는 유료 스포츠 행사 조직에 습관적으로 참가하는 및 총액이 명령으로 정해진 금액을 넘는 보수로서 어떤 스포츠선수를 고용하게 되면 스포츠비영리사단은 그 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상사회사법(1966년 7월 24일, 제66-537호)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하여는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49) 1901년 법률은 비영리사단을 “여러 사람이 그 지식 또는 활동을 이익 분배 이외의 목적에서 영속적으로 공동재산으로서 공유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정의하고, 비영리사단의 권리능력, 목적, 구성원, 신고방법 및 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로 하지 않는 스포츠비영리사단에 있어서도 일정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단체의 경영난의 예방과 경영부정을 방지한다고 하는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스포츠법 제11-1조 내지 제11-5조에서는 이 스포츠회사에 대하여 ① 회사경정에 관련한 법률 적용, ②회계감사역의 도입, ③스포츠회사의 자본, ④이익분배의 금지, ⑤이사의 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7) 스포츠 연맹에 관한 규정

프랑스 스포츠법은 제 3장에서 스포츠연맹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00년 개정법에서 이 스포츠연맹 부분에 대하여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졌는데 종래의 연맹의 구성, 종류, 독립성, 임무, 권한 등에 관한 규정외에 연맹활동 자격, 연맹정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벌칙규정 등에 관한 것이 추가되었다. 연맹의 권한이 커진 것에 상응해서 연맹 내부규율에 국가법이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협회체제하에서의 구성된다는 점, 연맹의 종류로서 단일 스포츠연맹, 복합스포츠 연맹, 유사 연맹 또는 중고 및 대학교 스포츠 연맹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스포츠연맹은 정관에 의해 규정된 요건 내에서 주스포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 제16조 Ⅲ은 “승인(*agrément*)은 공적 임무의 이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프랑스 올림픽스포츠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참사원 령에 의해 규정된 정관(*statuts*)의 형태 및 규칙(*règlement*)의 형태에 부합하는 복무(*disciplinaire*) 규약으로 가결된 연맹들에게 스포츠 주무장관에 의해 교부될 수 있다. 기관들은 서로 협력의 의무를 지며 협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참사원의 령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고 있다. 이 때 스포츠 연맹은 교육으로의 스포츠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8) 프랑스 올림픽 스포츠위원회

스포츠법 제19조에서는 프랑스 올림픽 스포츠위원회(CNOSF로 약칭)의 임무와 권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19조 I은 CNOSF가 스포츠 협회 및 스포츠회사들 그리고 스포츠연맹들과 그들의 licence를 취득한 자

들을 대표한다고 하여 스포츠단체들의 대표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CNOSF가 올림픽의 상징물, 표어, 올림픽 가(歌) 등에 관한 권리의 보유자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9조Ⅲ). 특기할 것은 CNOSF가 스포츠분쟁에 대한 중재임부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19조Ⅳ는 프랑스 올림픽 스포츠위원회가 도핑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을 제외한 스포츠분쟁에 중재기구로서의 임무를 부담함을 명시하고 분쟁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분쟁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소로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CNOSF에 의한 중재라는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때 모든 중재자들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CNOSF의 내부규정이 아닌 스포츠법에 그러한 명문규정을 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9) 스포츠 시설 및 행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프랑스 스포츠법은 국가적 스포츠시설 기본계획의 작성(제39조), 학교시설에서의 스포츠시설의 설치(제40조), 스포츠시설의 조사목록의 작성과 스포츠시설의 신고(제41조), 스포츠시설의 폐지·변경에 관한 소유권 제한(제42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관중에게 공개되는 스포츠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수입으로 충당하는 시설장은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고, 인가가 교부되는 데에는 건축, 교통수단, 좌석 배치 및 환경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42-1조). 또한 스포츠를 관전하는 관객의 폭력행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스포츠 행사 개최의 경찰에의 통지(제42-3조), 시설장 내에서 명정상태에 이르는 자에 대한 벌금(제42-2조), 특정 알콜 음료를 시설장에 갖고 들어온 자에 대한 벌금(제42-5조), 메가폰 등에 의하여 관객의 폭력을 선동하는 자에 대한 벌금(제42-7조), 스포츠연맹, 서포터단체 및 스포츠행사시 특정 단체에 의한 제42-4조와 제42-6조의 범죄에 관한 민사 소송의 원고로서의 권리의 행사(제42-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객의 폭력행사의 증가·악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10) 스포츠 지도자 자격에 관한 규정

프랑스 스포츠법은 스포츠지도자 자격에 관하여도 규정한다. 유상의 스포츠지도자 또는 교육자가 직업 자격을 소지할 의무(제43조), 유럽 공동체 구성의 국적 보유자가 가진 스포츠에 관한 지도자 자격의 프랑스 국내에서의 적용(제43-1조), 스포츠지도자의 연수 조항(제45조), 무보수 스포츠지도자연수시의 휴가조항(제45-1조), 스포츠에 관한 직업교육을 하는 시설과 그곳에서의 연수의 내용(제46조), 국민스포츠체육협회의 스포츠지식연구와 확산 협력의무(제46-1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격과 면허가 없으면 스포츠의 지도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격, 면허증 교부가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스포츠 지도자의 연수, 양성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11) 의사의 관찰 및 스포츠 보험 등

프랑스 스포츠법은 제35조에 스포츠 및 의학정보가 기재된 개인 스포츠수첩이 스포츠선수에게 교부되는 것과 경기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서를 제시할 것이 정하여져 있다. 특히 그와 함께 제36조에는 스포츠의료진찰에 필요한 훈련과 스포츠 전문의사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이 행하여 지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37조는 보증보험에 관리자, 행사종사자 등의 민사책임을 담보하고, 모든 단체 조직이 보증보험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조직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38조는 스포츠 실행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유형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人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의무적이지는 않다는 점, 인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포츠단체에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는 스포츠를 하는 단체의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도 프랑스와 같이 보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시설책임보험 외에 스포츠 단체의 보증

보험이나 스포츠 人보험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국민생활체육 협의회가 스포츠연맹의 단체보험계약신청을 받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화나 스포츠보험에 대한 인식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독 일

1. 서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문화에 관한 권한(교육, 예술문화, 스포츠 등)은 주(州)가 가진다(문화고권). 기본법의 입법권 배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방은 전속적 입법권을 가지게 되고 외교와 체신 등의 11개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경합적 입법권은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각 주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방의 입법권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주가 전속적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 교육, 경찰, 지방자치법 등이 속한다. 이는 스포츠에 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연방에는 존재하지 않고, 스포츠 입법권은 주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 수준에서 스포츠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독일이 스포츠 진흥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 법률의 유무는 지방자치제상 진흥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방차원에서도 스포츠 진흥은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심은 세계선수권 스포츠 및 전국적 대표차원의 분야를 관할하는 것이다.

“스포츠 진흥법”을 가지고 있는 주는 베를린, 브레멘, 라인란트-팔츠, 퀘른 시 등이 있다.

1970년 독일스포츠회의가 발족하였는데 이 회의는 스포츠단체관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관계, 정당대표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 독일스포츠회의는 연방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행정기관, 학교, 스포츠단체 등에 대하여 스포츠 진흥 시책을 권고하고 각 관계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 뮌헨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트립운동’, ‘제2의 길’, ‘황금계획’등의 캠페인이 크게 일어났으며

이것에 수반하여 조건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현재 각주는 스포츠시설의 진흥에 역점을 두며 스포츠를 진흥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주 스포츠진흥법 제1조에는 스포츠 진흥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민이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 정비를 할 것, 교육의 장에서 스포츠 진흥을 할 것, 그리고 스포츠 조직 활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그 중 베를린주의 스포츠 진흥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베를린 주의 스포츠진흥법

(1) 편제와 구성

- 베를린 주 스포츠 진흥법 (1989년 개정) -

제 1 장 일반 규정	
제1조	스포츠진흥의 목적
제2조	개념규정과 적용범위
제3조	스포츠단체의 진흥에 관한 조건
제4조	스포츠진흥의 방법
제5조	스포츠보고서, 스포츠진흥의 목적에 관한 책무
제6조	인가된 스포츠 단체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조성 및 요금면제
제 2 장 스포츠시설	
제7조	계획과 참가의 원칙
제8조	스포츠시설 발전 계획
제9조	스포츠시설건설중앙위원회
제10조	스포츠시설의 조건

제11조	스포츠시설의 차용
제12조	상급 스포츠시설
제13조	특별한 주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대출
제14조	이용원칙

제 3 장 재정적 진흥조치 및 기타의 진흥

제16조	원조
제17조	의학적 처치
제18조	스포츠 체조교사에 관한 국가시험
제19조	여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제 4 장 스포츠단체와 공공행정의 협동

제19조	협동의 원칙
제20조	사단법인 베를린 주 스포츠 연맹의 참가
제21조	지구 스포츠 사업의 조직

제 5 장 이행, 종료 규정

제22조	행정규칙의 발효
제23조	이행규정
제24조	시행 및 실효

(2) 내용

1) 스포츠의 목적에 관한 규정

스포츠 진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관한 스스로의 능력 및 관심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조직적, 비조직적인가를 불문하고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스포츠에 있어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스포츠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스포츠 진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스포츠 진흥이 특히 이하의 구체적 방책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책으로는 ①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급을 강화, 확대, ②스포츠 활동의 내용, 형태 및 방법의 발전을 지원 ③클럽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스포츠 조직의 협력을 보장 ④스포츠에서의 명예직의 강화 ⑤유력스포츠선수의 사회적 후원에 기여 ⑥스포츠 도시 베를린의 강화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시책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17조 의학적 처치나 제18조의 스포츠 체조교사에 관한 국가시험에 위의 다섯 가지 구체적 방책 중 하나라고 뚜렷이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열거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제3항에서는 스포츠 진흥을 하는 경우 스포츠 활동의 본질적 동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를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된 내용으로는 ①플레이, 운동, 경기의 즐김 ②건강, 선수능력의 유지와 회복 ③기본적 경험의 획득 ④여가의 적극적 형성 ⑤교육, 인간형성에의 기여 ⑥다양한 주민 그룹의 사회적 통합이다.

제4항에서는 장애인, 젊은이 노인과 외국인의 요구에 대한 배려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는 대중 스포츠, 선수 스포츠가 수요에 응하여 조화적으로 진행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제6항에는 보육원, 학교, 시민대학, 대학, 노인시설, 병원, 형무소에서의 스포츠 진흥이 규정되어 있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스포츠 진흥법도 제2조에서 베를린 주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스포츠 진흥법은 제2조에서 “공적임무로서의 스포츠, 경기의 진흥”이란 제목 아래 “스포츠 및 경기는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 국에 의해 진흥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 군은 이 임무를 주민의 복지를 촉진한다고 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라고 하여 스포츠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임무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있다.

2) 스포츠 조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스포츠조직을 조성하는 경우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스포츠 조직은 스포츠에 관하여 권한 이는 주정부의 성원에 의하여 ‘진흥할 만하다’고 하여야 승인된다.

스포츠조직인 公課法(Abgabenordnung)에서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목적을 스포츠 진흥에 두고 “진흥할 만하다”고 보는 경우 승인된다. 제5조가 스포츠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제5조 제3항에서는 스포츠 진흥을 위해 스포츠 조직 자체의 존중이 규정되어 있다.

그밖에 제3장 ‘재정조성과 기타의 조성’에서는 승인된 스포츠 조직의 금전적, 비금전적 조성, 급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스포츠 조직 중 베를린 스포츠 의학 중앙상담소와 스포츠의학 센터에 관한 규정도 있다. 베를린 스포츠진흥법 제16조 ‘스포츠 의학적 케어’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의학센터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 스포츠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베를린, 스포츠 의학 중앙상담소에서 행해진다.’라고 되어 있다. 즉, 선수는 스포츠의학센터에서 국가스포츠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반대중 스포츠를 운영하는 자는 스포츠 의학 중앙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이 법률 시행에 있어 공공행정과 스포츠 조직은 파트너 쉽으로 되어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이때에도 스포츠 조직의 자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라인란트-팔츠주법 제3조에서는 공적 진흥의 대상에서 스포츠시설의 계획, 축조에 대한 조언과 보조금의 급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포츠단체, 스포츠클럽의 조성에 대해 국가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스포츠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스포츠 진흥의 수단에 관한 규정

베를린 스포츠 진흥법 제4조는 ①스포츠시설의 건설, 준비, 아울러 스포츠 활동을 위한 특별한 토지의 준비, ②주 소유의 토지, 건물의 대출

③금전적인 원조, ④운영에 관한 비금전적 급부, ⑤스포츠 의학적 케어, ⑥스포츠, 체육지도원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스포츠 진흥이 행해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진흥 행정의 역할을 스포츠 시설확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스포츠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스포츠에 대한 진흥정책을 펴겠다는 입법적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4) 스포츠 시설에 관한 규정

베를린 주 스포츠진흥법 제2장의 스포츠 시설에서는 스포츠시설 계획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가와 스포츠 시설의 수요에 대한 산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스포츠 시설 계획에의 민주적 참가란 이해관계가 있는 스포츠조직과 학교 등의 청문회를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진다.

베를린 스포츠진흥법 제10조에서는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계획할 때 요건으로 제1항의 스포츠시설은 원칙적으로 경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 제2항은 공공스포츠시설의 충분한 수가 장애인이 이용에 제공되는데 충분한 수요여야 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공스포츠 시설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전문 스포츠인 양성에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공공스포츠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권에 있어서 평등을 기여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3) 소 결

베를린 주 스포츠 진흥법은 총 제5장 제24조의 편제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주 스포츠진흥법이 독일 스포츠 진흥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용한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주마다 스포츠 진흥의 실태를 장기적으로 판단하여야만 분명해질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법률에 기초하여 스포츠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다룰 수 있는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영역으로서 새로운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스포츠가 각 나라마다 어떤 부분에 스포츠 진흥의 역점을 두고 있는가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라인란트 팔츠 주의 스포츠 진흥법과 베를린 주의 스포츠진흥법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독일연방차원에서의 스포츠 진흥법 제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제 3 절 일 본

1. 서

일본은 1961년 6월 16일 “스포츠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 진흥법은” 스포츠 기본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법은 총4장 제2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국가의 스포츠를 진흥하고자 열망으로부터 제정된 것이었다.

“스포츠 진흥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구조가 비슷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 즉, 변화하는 스포츠 산업과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한 요구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부터 하여금 “스포츠 기본법”的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법이기도 하다.

일본은 체육행정을 통괄하는 문부성을 두고 있다. 문부성의 업무는 교육, 과학, 스포츠 및 문화를 증진시키고 홍보할 의무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문부성은 1개의 장관비서실(Minister's Secretariat)과50) 6개의 국(Bureau), 그리고 문화사업청(Agency for Cultural

50) 문부성에서 체육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중 대표적인 곳은 장관비서실인데 이 곳의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인 비서업무, 예산편성, 회계, 인사관리이고 둘째, 국내외 교육, 과학, 스포츠 및 문화와 관련된 기본정책 연구, 셋째,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정보의 저장 및 처리, 공공관계의 유지,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넷째,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립에 대한 지도 및 조언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와는 달리 일본은 문부성에서 스포츠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간의 스포츠와 관련한 교육으로의 스포츠와 국민대상의 스포츠에 대한 업무가 충돌되지 않을 수 있어 복지행정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Affairs)을 가지고 있다.

6개의 국 중 하나인 “체육 스포츠국”은 학교에서의 체육, 스포츠 진흥 스포츠 시설의 개선과 스포츠 지도자 육성과 훈련 등을 통하여 평생 스포츠 활동을 증대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문부성의 “체육, 스포츠국”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의 “체육국”⁵¹⁾과는 달리 교육으로의 스포츠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 스포츠 진흥법의 내용

(1) 서

스포츠 진흥법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치, 제3장 스포츠 진흥 심의회 등 및 체육 지도위원, 제4장 국가의 보조로 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스포츠 진흥법의 목적과 스포츠진흥을 위한 조치, 일본 스포츠 조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스포츠 진흥법의 목적⁵²⁾

제1장 총칙에서는 스포츠 진흥법의 목적을 “스포츠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명확하게 하고 이로써 국민의 심신이 건전한 발달을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스포츠로 인하여 밝고 풍부한 국민생활의 형성에 이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의 운용에 관하여 “스포츠를 할 것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스포츠를 전향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정치적인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정치적 간섭 배제”조항은 프랑스 “신체적 스포츠 조직의 축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독일 베를린 주의 “스포츠 진흥법”

51)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년도나 “체육국”이라는 주무부서의 동일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을 상당히 참고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52) 일본 스포츠진흥법의 제정취지, 입법과정, 내용, 법적 성격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는 小笠原 正, スポーツ振興法, 季刊 教育法 第110号(1997. 6), 82頁이하 참조.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정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사용의 금지”가 제1조에 규정될 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과거에 침해당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2조에서는 이 법률에 있어 “스포츠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스포츠란 “운동경기 및 신체운동-캠프 활동 그 밖의 야외활동 전반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스포츠는 야외활동 전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운동경기와 신체운동으로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야외활동 전반”이라는 용어에서 스포츠의 범위를 레크레이션까지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2조의 “스포츠의 정의 규정”은 제10조 야외활동의 보급 장려 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제3조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대한 방침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해당하고 국민들 간의 행해지는 스포츠의 자발적인 활동에 협력하면서 폭넓게 국민이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에 있어 자주적으로 그 적성 및 건강상태에 따라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제조건의 정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 법률에 규정한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은 영리를 위한 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프로스포츠에 관한 국가의 스포츠 관여조치는 국가의 시책범위에서 일단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조는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문부과학 장관의 계획책정에 대한 규정으로서 스포츠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제1항) 미리 심의회 등 관련규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제2항) 지방 실정에 입각한 스포츠 진흥에 관한 계획을 지방위원회가 정하고(제3항) 이때에도 “스포츠진흥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을(제4항)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행정의지를 보이고 있다.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치

일본은 생활 체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일본은 앞서 스포츠진흥법 제3조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스포츠에 대해서는 본법에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체육, 스포츠는 명치유신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나, 1964년 동경 올림픽의 참패를 계기로 하여 국민체육진흥의 필요성과 고도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체육 운동을 대대적으로 행하여 왔다. 이때 일본은 생활체육에 역점을 두었으며, 생활체육의 발전을 주로 시설의 확충과 지도자 양성에 그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시설과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일본체육연맹과 같은 민간단체들은 지도자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는 등 역할을 이원화한 일본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사회체육진흥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생활체육에 있어 1947년 제정된 사회교육법, 1961년 제정된 스포츠 진흥법 2대 법률에 근거하여 시책들을 추진하였는데, 스포츠 진흥법에 근거하여 “강력한 정부 주도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각종 스포츠 클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진흥법은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치를 제2장에서 규정하였는데 국가주도형 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는 제5조의 체육의 날 행사와 제6조 국민 체육대회,⁵³⁾ 민간단체의 스포츠 행사장려를 통한 원조와 지원(제7조) 직장 스포츠의 장려(제9조) 야외활동의 보급 장려(제10조)에서 그 의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치로서 스포츠지도자를 양성하고(제11조 지도자의 충실의무), 시설을 정비하고 누구나 스포츠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제12조, 제13조) 국가의 현창의무(제15조)까지 폭넓게 규정하는 등 생활체육의 발

53) 김철수, “전국고등학교 종합체육대회, 일본국민체육대회, 검소하게 치러지는 모범적인 축제” 대한체육회, 체육통권 367호, (2004.12) 32면, 아테네올림픽에서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한 스포츠강대국 일본은 종합대회로 국민체육대회와 전국고등학교 종합 체육대회가 있다. 이들 대회는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있는 일본인들에게 범국민이 참여 하는 축제와도 같은 모범 대회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스포츠강국의 힘이 생활체육 진흥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이 스포츠 진흥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체육시설이 생활 체육시설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제13조) 문부성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생애에 걸쳐 스포츠에 친숙한 생활을 통하여 건강, 체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도록 장려하는 “건강한 80세되기”(Active 80 Health Plan)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⁵⁴⁾ 생활체육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기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에 재정을 보조하고 각 지역 스포츠 클럽을 재정보조하는 등(제7조) 생활체육에 있어서 만큼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스포츠 조직에 관한 규정

일본의 스포츠 조직은 국가의 스포츠 진흥심의회(제18조)와 체육지도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제19조), 그리고 일본올림픽스포츠위원회(제14조제2항)이 있다. 이는 국가의 스포츠조직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과 다른 것은 일본의 경우 문부장관이 스포츠 진흥심의회를 스포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러한 스포츠국가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에 있어서 스포츠 조직은 국가조직보다 민간단체가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일본 아마추어 스포츠 연맹(Japan Amateur Sports Association)과 같은 스포츠조직들은 다양한 스포츠 보급과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부성은 이런 조직들이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에 스포츠 진흥기금을 통해 이런 조직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제20조제2항의4호)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조직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레크레이션 연맹(National Recreation Association of Japan) 그것이다.⁵⁵⁾

54) 고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일본은 1989년 12월 “고령화 및 건강유지를 위한 사회체육,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인 골드플랜(Gold Plan)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55) 1990년 12월 문부성은 프로스포츠에 대한 조정단체로 일본 프로스포츠 연맹도 (Japan Professional Sports Association) 발족시켰다.

또한 문부성은 그동안 아마추어에게만 실시하던 제도를 프로 스포츠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1994년 아마추어-프로 스포츠교류 위원회가 창설되어 아마추어와 프로스포츠, 그리고 지방정부 및 여타 조직들에 대해 대표성을 띤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일본 스포츠 법학회의 스포츠 기본법 가안

(1) 일본 스포츠 진흥법의 한계⁵⁶⁾

1)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

일본 스포츠 진흥법은 1961년 6월 16일에 법률 제141호로 공포된 일본에서의 유일한 ‘스포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은 3년 후(1964년)에 동경 올림픽대회가 개최되고 이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를 국민 일반, 특히 일본 청소년 사이에 넓게 보급시켜 건강과 체력의 비약적 향상에 기여함과 함께 일본 스포츠 기술을 국제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민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기회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명확하게 하고 스포츠의 발본적 진흥을 계획하여 이를 기초로 국민 심신의 건전한 발전과 밝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스포츠 진흥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 당시의 제정 목적이었다.⁵⁷⁾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은 어느새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스포츠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보다는 더 진행된 단계에서 “스포츠권”을 확립하여 “새로운 인권”的 문제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법의 내용은 ‘스포츠 진흥의 기본법’으로 하여 제4장 제23조와 부칙이 정해져 있고 목적, 스포츠의 정의, 시책의 방침, 계획의 책정, 스포츠진흥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 조치로서 체육의 날의 행사, 국민체육대회 등 하나

56) 윤용택, “스포츠권과 스포츠기본권에 관한 시론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6권(2005) 120면

57) 제38회 日本 國會 衆議院文教委員會會議錄 入木撤雄 의원의 설명부분

하나의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여기에 도도부현 및 지방자치제에 스포츠 진흥심의회 및 체육지도원을 설치하고 국가의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후 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많은 일본의 새로운 인권의 해석에서도 그러했듯이 스포츠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 전반에서 이를 이해하고 있다.

자유권적 측면에서는 스포츠권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국민이며, 국가 및 타인으로부터의 개인과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종목선택의 자유, 스포츠 조직에의 소속에 대한 자유, 스포츠 조직의 운영에 대한 자유, 기술체계의 취득에 대한 자유, 경기대회의 참가 자유 등이다.

사회권적 측면으로는 스포츠가 만인의 것이 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의 설치, 스포츠교실의 개설, 스포츠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등 물질적 조건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의 성격상 스포츠에 대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와 같은 물질적 조건정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 스포츠 진흥법은 1961년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첫째, 제정동기가 아마추어의 프로 스포츠 선수의 강화와 이를 위한 국고지출에 있다는 점, 둘째 각 조문이 의무조문이 아닌 단순한 프로그램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점, 셋째, 스포츠시설에 대한 국가 보조율이 극히 낮아 실제 상황에 맞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애초에 스포츠 진흥법이 복잡한 권리의무의 법률이라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조성진흥의 법률로서 제정되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으로 직접적 구속력을 주고 하위법률에서 특정법률을 만들어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확산되었다.

2) 입법취지의 한계

스포츠진흥법이 논의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본법이 훈시규정, 장려규정으로서 강제력이 따르는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성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즉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권의 보장을 확보하는 사법수단으로서 역할을 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본법이 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써 스포츠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스포츠를 개인적 일의 성격으로 취급하는 점, 즉 “스포츠를 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자주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건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 또한 스포츠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영리를 위한 스포츠진흥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⁵⁸⁾

그러나 스포츠는 좋아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 일에 그치고 있는 이상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스포츠진흥법 제25조)에 대한 구체적 보장으로는 되지 않고 새로운 인권으로서 스포츠권이 보장되어 가는 현재에 있어서 불충분하다.

3) 체육지도원의 법적 지위

스포츠진흥법은 체육지도원에 대하여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교육법제인 사회교육법, 도서관법, 박물관법에 비교하여 자격에 대해 정함이 없고 직무도 실기지도와 지도, 조언에 그치고 있어 이 점으로부터 스포츠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일본 사회교육법은 제9조에서 사회교육주사의 설치, 직무, 자격, 강습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구 1만명 미만의 율촌에서는 주사설치가 유예되고 있지만 1만명 이상 율촌에서는 昭和 38년 4월 1일 이후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회교육국장의 통달도 나왔다. 도서관법에서는 제4조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전문적 직원을 사서 및 사서보로 제5조에서는 자격, 제6조에서는 강습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립도서관은 제13조에서 전문적 지원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법에서도 제4조에서 학예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에서 자격을 규정하며 여기에 사회교육주사강습 등 규정이 문부성령으로 규정

58) 제38회 日本 國會 衆議院文教委員會會議錄 入木撤雄 의원의 설명부분

되고 도서관법시행규칙, 박물관법시행규칙에서 자격인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스포츠진흥법은 단지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체육지도원을 둔다고 하면서 자격과 강습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겨우 ‘사회체육지도자의 지식, 기능심사 사업의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는 인정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한 체육지도원은 비상근으로서 “체육지도원은 사회적 신망이 있고 스포츠에 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며 그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열의와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平成 원년(1988년) 보건체육심의회의 “21세기로 향한 스포츠 진흥방책에 대하여”에서는 지도자의 양성, 확보와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 자금 확보 등의 스포츠 진흥방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가기“ 위하여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지도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자격제도의 확립을 포함하여 양성, 확보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포츠진흥법에 의하여 확실히 일본에서 스포츠를 하는 조건상 다른 사회교육법제와 동일하게 사회체육지도원을 전문직화하여 자격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스포츠권 보장에 대한 조건정비인 것이다.

(2) 일본 스포츠 법학회의 스포츠 기본법 가안⁵⁹⁾

1) 서

위와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일본 스포츠 법학회의 스포츠 기본법요강안은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스포츠 기본법 요강안에는 전문과 9개의 제목의 장이 있는데 그 내용이라 함은 1. 스포츠에 관한 권리,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3. 스포츠의 보호, 4. 스포츠단체의 권리와 의무, 5. 스포츠의 안전, 6. 스포츠와 환경, 7. 스포츠에 관한 국제협조, 8. 법령 제정의무, 9. 스포츠진흥법과의 관계이다.

59) 이 법안은 1997년 12월 20일 일본스포츠법학회에서 만든 요강안이다. 이는 千葉正士, スポーツ法學序說, 信山社, (2001), 191頁이하에도 수록되어 있다.

2) 전 문

전문에 관한 내용은 이를 선언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본 험력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공법학자들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이념을 명시하는 한 부분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정신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일본 스포츠법학회가 제시한 스포츠 기본법 요강안의 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문

스포츠는 국민문화, 교육, 건강을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인으로서 기여하여 왔다.

국민이 자유인격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여가를 보내기 위해 스포츠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보호와 스포츠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각종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스포츠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기본을 명시하고 새로운 일본스포츠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한다.

3) 스포츠에 관한 권리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① 스포츠에 관한 권리

가.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 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며 생애에 걸쳐 실제 생활에 스포츠에 참가할 자발적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는 인종, 신조, 성별, 출생,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장애사정 등에 따라 차별되지 않는다.

나.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자유이며 항상 공정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 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포츠에 참가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조직, 재원, 안전, 시설, 교육, 지도자, 경기수준의 향상, 연구 등 모든 조건을 정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시계획을 법령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 나. 국가는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스포츠에 관한 종합적인 행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 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이용을 법령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 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에서 체육 및 스포츠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직장에서 스포츠의 기회를 보장하며 또한 서로의 연대를 심화시켜야 한다.
- 마.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자격을 가지는 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 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포츠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연수, 양성해야 하며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 스포츠의 조건정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는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4) 스포츠의 보호

- ① 스포츠는 정치적, 사업적 또는 금전적인 폐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유, 안전 및 재산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스포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에 참가한 자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분쟁처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스포츠단체의 권리와 의무

- ①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는 스스로 선택한 스포츠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스포츠단체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법인으로의 설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구성원의 자유, 공정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스포츠에 관한 국내기관을 설치하고 당해 국내기관은 스포츠의 독립과 자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 스포츠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당해 국내 기관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
- ④ 각각의 국내경기연맹은 스포츠종목의 발전을 위해 모든 조건을 정비하고 필요한 규약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스포츠의 안전과 스포츠와 환경

① 스포츠의 안전

- 가.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는 항상 안전을 배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 나.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각종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사고의 구제를 위해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와 환경

스포츠는 자연, 도시계획, 지역사회 등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시설은 환경을 배려하며 건설되어야 한다.

7) 스포츠에 관한 국제협조

스포츠에서는 국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국가는 외국에서 승인되어진 스포츠에 관한 권리선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법률제정의무와 스포츠진흥법과의 관계

① 법률제정의무

법률에서 정한 모든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② 스포츠진흥법과의 관계

스포츠기본법의 시행 후 스포츠진흥법의 각 조항에 관한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제 4 절 캐나다

1. 서

1961년 9월 29일 제정된 캐나다 (구)휘트니스 아마추어스포츠법은⁶⁰⁾ 2003년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스포츠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현재 캐나다에서의 스포츠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로는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캐나다의 bill number c2로서 2003년 3월 19일에 합의되어 2003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시켰으며 총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에서 발의되었던 「신체활동과 스포츠 증진 법안」은 2002년 10월 9일에 법안의 모든 절차가 끝났고, 2003년 2월 4일 하원에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상원에서의 수정이 2003년 2월 27일에 행해졌고, 2003년 3월 19일에 여왕의 승인(Royal Assent⁶¹⁾)을 받았다.

이 법률의 특징은 캐나다 정부가 스포츠에 관한 의무에 있어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대한 분리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스포츠에 대하여 장관이 스포츠를 증진, 발전시키고 독려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의 스포츠 단체 설립 의무를 기반으

60) 휘트니스 아마추어 스포츠 법률을 신체활동과 스포츠 법률로 대체한 것은 “아마추어”라는 용어의 모호성(불명료함)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

61) 국왕 (Queen) 캐나다 법률안의 재가, 의회 소집 및 해산, 외교사절의 접수 등 행정권을 장악하여 내각의 조언을 통해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권한을 총독에게 대리한다. 총독 (Governor-General) -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은 캐나다인 중에서 수상의 추천에 의하여 국왕이 임명한다. (재직시의 호칭은 “His/Her Excellency”이다) -총독은 캐나다 건국 이후 1952년까지는 영국인이 임명되었으나, 이후 캐나다인이 취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독의 임무는 연방의회 소집/해산, 각종 협약에 서명, 해외대사 영접 및 해외의 대사파견,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각종 법안의 승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로 하여 위원회와 스포츠분쟁해결기구라는 두 개의 큰 국가스포츠단체에 대해 구성과 의무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본 법률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2.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⁶²⁾

(1) 목 적

본법의 목적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 제5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은 캐나다에서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증진하고 발전시키고 독려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음을 밝히고 “장관은 장관이 이 목적들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다는 고려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장관의 판단을 신뢰하였다. 장관은 법률의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장려와 공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2) 서 문

캐나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에는 서문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캐나다 정부가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행정 방향에 대한 통합적 지침으로서 선언적 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과 스포츠가 캐나다의 문화 그리고 사회의 통합적 부분들로서 건강, 사회적 부종, 다원적이고 경제적인 활동,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이익들을 창출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의 중요한 이익들과 스포츠 관습의 이익들 사이의 이해가 증가되어 가기를 바란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의 수준을 향상 시킴과 그들의 스포츠의 참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캐나다인들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증진하고 공용어 법률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 단체를 독려하여야 하고 신체활동과 스포츠 단체, 신체활동과 스포츠 증진에 있

62) <http://laws.justice.gc.ca/en/P-13.4/94164.html>

어서 신체활동과 스포츠 단체 그리고 사적 영역들을 독려하여야 한다. 이제 친애하는 여왕과 캐나다 상하의원 합의와 조언들을 함께 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3)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대한 二分 정책

이 법은 제1조에서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 “장관의 정의”를 “장관은 이 법의 목적에 의한 위원회의 장으로서 지정된 캐나다 추밀원의 회원 또는 회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대한 이분적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조 “신체활동에 대한 정책”에서 캐나다정부의 정책목적은 ①건강과 웰빙의 근본적 요소로서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것, ②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삶속에 신체활동을 통합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독려하는 것, ③모든 캐나다인들의 활동적인 것을 막음으로써 직면하는 장애들을 줄임으로써 원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4조 “스포츠에 대한 정책”的 목적에서는 “도핑방지 스포츠, 모든 국민들을 공정하고 존중으로 대우하는 스포츠, 스포츠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정하고 완전한 참여와 공정하고 평등하고 명백하고 정확한 분쟁해결을 포함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캐나다는 신체적 이익과 스포츠의 이익을 분리하여 국가의 국민의 건강증진의무와 스포츠정책에 있어 반도핑, 비차별, 공정한 분쟁해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스포츠 조직에서도 나타나는데 캐나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는 스포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스포츠 위원회(제7조, 제8조)와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제9조~제35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스포츠위원회는 신체활동과 스포츠 양 정책마다 별개로 위원회를 둘 수 있음이다.

(4) 스포츠 분쟁해결기구

캐나다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상의 스포츠분쟁해결기구에 대한 규정은 제9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으로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규정한 법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이다. 동법은 이러한 기구의 운영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스포츠분쟁해결기구는 스포츠분쟁에 대한 국내 대체적 분쟁해결의 사무,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또한 스포츠 조직들 사이의 분쟁과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회원들 포함)의 분쟁들도 포함하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한다.(제10조 제2항)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회로 구성되고 여기서 업무를 하게 된다.(제13조) 특히 무보수의 원칙상 이사들은 어떠한 급여도 받을 권리가 없다.(제16조) 중재인과 조정인에 관한 규정인 제29조에는 서로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캐나다 공용어의 하나 또는 다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제29조 C)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의 센터 모든 감독관과 직원은 의무와 직무를 수행하고 그들 권한을 행사하면서 (a)센터 최고이익관점에서 신의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b)신분적, 사회적으로 유사한 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의 주의, 근면, 기술을 실행하고, (c)법률과 센터의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30조 제1항) 이 법률에 의한 감독관 또는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의무로부터 감면하는 계약이나 이를 해결해주는 규정은 금지되며, 해당규정이나 정관, 또는 그들의 어떠한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감독관 또는 직원을 감면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0조 제2항) 그러나 감독관 또는 직원은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였다면 제1항에 근거하여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제30조 제3항)

제 4 장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향

제 1 절 스포츠기본법의 의의

1. 스포츠 기본법의 의의

스포츠 기본법은 스포츠 정책과 행정이 효율성 제고와 체계화를 기하는 측면에서 필요가 있다. 스포츠 기본법에는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의무와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된다고 하겠다.

스포츠 기본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 스포츠에 관하여 발생할 업무의 충돌을 방지하고 업무 충돌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것이다.

2.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과 효력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은 스포츠 진흥에 있다. 다만 스포츠 기본법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선언적인 효력에 그칠 것인지 직접적 효력을 발휘하는 근거규정으로 둘 것인지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⁶³⁾

제 2 절 스포츠기본법 제정시 주의할 점

1. 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스포츠에 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스포츠 기본법의 효력은 스포츠 정책의 기본방향만을 설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⁶⁴⁾ 같은 형식을 따르는 것도 적절하다.

63) 자세한 것은 김상겸, “한국헌법상의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6권(2005), 129면 이하

64)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은 현재 스포츠기본법 역할을 해 왔던 “국민체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포츠에 관한 입법이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스포츠 진흥”의 일관된 목적 아래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로스포츠 근거규정의 마련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히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전을 즐기고 단결을 도모하며 국력을 상징하게 되면서 스포츠 경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직업으로 스포츠 경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관전하게 하여 상업화하는 스포츠를 프로스포츠⁶⁵⁾라고 한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에 관한 법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 제2항을 들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전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프로스포츠 전반에 대한 법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가 프로경기를 육성할 수 있다는 착안 자체가 변화한 스포츠환경에 있어 시대에 뒤늦은 감이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는 비록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제 시장경제에 따라 자유롭게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스포츠에 대해 국가는 육성보다는 공정한 질서 등 스포츠 상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 스포츠에 관한 국가의 관여범위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2조를 참조해 볼만하다.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에게 도덕성 높

65) 김용섭,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 한림법학 제16권(2005) 257면.

김용섭교수는 스포츠를 대중스포츠·전문스포츠·프로스포츠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기본법에서 가장 적절한 분류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여기에 “교육으로서의 스포츠”를 추가하고 싶다.

은 라이센스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교부의 권한을 해당 스포츠연맹에게 수여하여 스포츠에이전트계약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위임수수료를 공지하게 할 뿐 아니라 계약 총액의 10%를 넘지 않게 하는 등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스포츠 기본법에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관여규정을 두되 프로 스포츠 산업을 저해할 정도로의 국가적 간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역시 국가가 지는 것이 좋다.

3.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지도자에 관한 규정의 보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제26조),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의무(제29조), 체육시설업자의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게 할 의무(제2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체육지도자의 경우 일정한 스포츠 종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어 일정한 스포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 경우 스포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스포츠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거나 자신의 건강과 스포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독일 베를린 주의 스포츠진흥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 스포츠진흥법 제9조는 스포츠시설건설중앙위원회를 두어 스포츠 시설에 대해 관리, 운영감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스포츠 의학 중앙상담소(국민 누구에게나 개방), 스포츠의학센터(선수에게 개방)를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뿐만 아니라 스포츠 개개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스포츠단체 소속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이나 스포츠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스포츠를 하는 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人보험도 스포츠시설을 중심으로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 제37조, 제38조는 스포츠 관련보험 의무뿐 아니라 스포츠단체에게 人보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과도 관련하여 믿을만한 자격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스포츠간의 차별성 없이 모든 스포츠에 전문 자격증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프랑스 「신체적·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내지 제46-1조의 스포츠지도자자격과 연수, 연수시설, 연수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지도자의 양성은 스포츠 진흥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인적 물적 요소일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스포츠로 가는(전문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 밑거름이 될 것이다. 스포츠기본법은 이러한 명문 규정을 둘으로써 관련 법률의 입법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산재된 법률의 부서 통합의 방향

현재 문화관광부 직제 “체육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스포츠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수상스포츠, 항공스포츠, 경마스포츠, 자전거스포츠 등에 대해서는 관할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관련 법률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상스포츠와 관련된 법제로는 「수상레저안전법」인데 이는 해양 수산부의 소관이다. 이 법은 수상스포츠의 안전과 질서, 레저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상레저기구와 요트의 조종 면허자 시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서 배제되고 있어 기구사용의 안전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스포츠 역시 항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의 소관이다. 항공스포츠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레저스포츠 중 하나로서 바람과 기후 등 대기의 자연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포츠이다. 항공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보다도 전문가의 조언이 요구되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격증의 취득은 국내에서 어려운 편이다.⁶⁶⁾ 그밖에 경마스

66) 항공스포츠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은 초경량 비행기 자격증에 대한 것뿐이다. 초경량 비행기 자격증은 현재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비행경험 20회 이상의 시간을 공부한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항공 스포츠 자격증은 민간단체인 협회에서 훈련학교 등을 중심으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어 국가의 통제권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포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농림부의 소관이다. 경마스포츠는 조교와 기수를 한국마사회가 등록, 신청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조교는 경기지도자 1급, 2급이 될 수 있으며 기수는 특정한 선발기준이 없다. 특히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스포츠에 대한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권의 향유가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법적 근거가 그 주를 이루는 법률이다.

이렇게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달라 한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부작용은 국민들의 스포츠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다. 스포츠 지도자 자격의 문제, 스포츠 시설과 용품의 안전성 문제,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스포츠 접근 등은 스포츠의 종류와는 무관한 국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스포츠기본법에는 산재된 법률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스포츠로 인한 위험에서 안전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스포츠 조직에 관한 질서 명시의 필요

스포츠 조직에는 국가 스포츠조직과 민간 스포츠조직 등이 있다. 스포츠 조직에 있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함께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을 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체육국의 세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성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 조직을 프랑스 올림픽위원회와 국가가 승인한 수많은 스포츠연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 「스포츠진흥법」은 스포츠심의위원회를 두어 국가가 스포츠와 관련한 정책을 계획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체육지도위원과 교육위원회를 두어(스포츠진흥법 제19조) 교육으로의 스포츠는 각각 다른 국가단체가 스포츠와 관련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본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본 올림픽스포츠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국가보조금정책을 사용하여 민간단체를 등록, 통제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스포츠연맹에게 해당 스포츠에이전트라이센스 권한의 부여

등 국가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국가조직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올림픽스포츠위원회는 스포츠연맹간의 또는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부분의 분쟁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목하여 볼 만하다.

우리나라도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의 스포츠조직이 있으나 수많은 스포츠연맹은 국가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 그리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고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스포츠권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있어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에는 현행 국가의 스포츠조직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민간 스포츠조직과 국가 스포츠조직과의 관계, 국가 스포츠조직의 역할과 민간 스포츠조직의 역할 그밖의 협력의무 등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포츠권 향유를 위한 질서에 대해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스포츠관련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규정의 필요

현재 스포츠 관련 기금과 복권 사업이 스포츠를 향유하는 국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감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 및 정부외의 출연금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과 골프장시설 입장료의 부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 올림픽휘장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0조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국민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광고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생활보조금의 지원, 자금의 융자,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

관 운영·지원,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하고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의 일부를 관련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22조의9에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올림픽 기념사업 등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업이 골고루 편성되고 있는지 일정한 기간마다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문화관광부 관련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국정감사가 아닌 국민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는 알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요사업인 ①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②국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③선수, 체육지도자, 국제심판 요원 양성과 장려 사업, ④올림픽대회와 기타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체육지도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⑤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⑥서울올림픽대회 기념행사의 개최·지원 및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 ⑦우수 체육용 기구 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에 대한 자금 융자, ⑧학교 운동 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⑨체육과학의 연구·보급, 선수의 과학적 훈련 및 국민체육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불평등 없이 고루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스포츠관련기금운용의 국민 차원에서의 감사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이 스포츠관련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스포츠 기본법상 스포츠관련기금사업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하여 국민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국민전담팀의 계약감사 운용, 관련사업의 불평등해소를 위한 공청회의 요구 등 스포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7. 국제경기대회지원 상시 규정의 필요

현재 국제경기대회지원을 위한 법률로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 있다. 이 법률은 2001년 3월 28일에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서울아시아경기대회 ·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1984) 이후 국제경기대회가 있을 때마다 한시법을 제정하여 왔다. 국제경기스포츠지원법률에는 대개 관련 사업에 대한 조직위원회를 발족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경기스포츠는 국가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스포츠수준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⁶⁷⁾

그러나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은 한시적인 법률로서만 지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전문체육의 지원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국제경기대회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선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의 이미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67)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제1조의 제정목적에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포츠기본법에는 국제경기대회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과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의 필요

스포츠에 대한 나날이 높아지는 관심은 스포츠 분쟁의 증가 및 다양화와 함께 스포츠의 자치권 내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하였다. 특히 스포츠 내의 통일적 규칙의 제정과 선수간 또는 스포츠 단체간 그리고 구단과 선수간의 갈등 등은 스포츠 경기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된 심판기관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분쟁의 조정기구를 통해 그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법원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민, 형사상의 분쟁이 다뤄지고 있는 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보거나 기술적 전문성에서 보는 등 그밖에 여러 점을 감안할 수 있는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오히려 사전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당사자가 원칙으로 그 심판에 승복하도록 약속하는 것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올림픽 스포츠 위원회는 스포츠 중재의 권한을 가지는데 도핑행위 분쟁을 제외하고 생긴 분쟁에 대하여 중재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때 이 분쟁은 스포츠연맹과 관계가 있는 경우, 모든 사법상 불복신청에 앞서 우선적으로 조정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적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일반 재판소에 소로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올림픽스포츠위원회에 의한 중재라는 특별한 사법절차를 명문화 한 것에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때 모든 중재자들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분쟁해결기구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스포츠분쟁해결기구도 참조해 볼만하다.(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35조) 캐나다는 법률 내에 상세히 구성기구와 주의의무, 해당적용법의 범위 뿐 아니라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스포츠기본법에 이러한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스포츠분쟁조정기구는 국가가 관여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스포츠만의 특성을 존중하는 기구로서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분쟁조정기구의 규정과 함께 분쟁해결기구의 중재시에 필요한 전문 심판원의 양성과 양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도 스포츠 기본법에 명시하면 좋을 것이다.

9. 도박과 도핑에 대한 국가적 입장 필요

스포츠에 있어서 도박과 도핑은 유해한 요소일 뿐 아니라 스포츠의 기본 윤리를 훼손시키는데 그 제재의 원인이 있다. 먼저 현행 경륜·경정법은 “투표권을 발매하고 이를 관전하고 환급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내기 스포츠라고도 하는데⁶⁸⁾ 이를 도박의 일종인 사행산업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게임산업 내지 레저산업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지만 “중독”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사행심을 자극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레저의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⁶⁹⁾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형법상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의존하는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나 스포츠에 있어서 각종기록이나 종전 성적 등을 고려하여 승자의 적중을 위해 돈을 거는 것이 우연성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⁷⁰⁾ 도핑은 운동경기에서 운동 선수들이나 경주마들에게 경기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약물을 말한다. 도핑금지는 첫째로 스포츠경기에 있어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정신의 훼손을 막는 데에 있고

68) 김용섭, 전계논문, 281면 이하.

내기스포츠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내기를 걸고 적중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기스포츠(Sportwette)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경륜, 경정뿐 아니라 경마(한국마사회법), 소싸움(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에도 그 근거가 있다.

69) 김용섭, 전계논문, 284면 이하.

전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여가적 측면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지나친 규제로 경륜, 경정의 흥미까지 잃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70) 김용섭, 전계논문, 285면.

합법적 도박의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 장래 승부의 예측이 불확실한 행위로서 주식 거래와 유사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둘째로 스포츠 선수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 끝으로 스포츠의 품위유지와 청소년의 악영향을 막는데에 있다.⁷¹⁾ 세계반도핑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를 중심으로 각국⁷²⁾에서도 도핑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에는 도박과 도핑 등 스포츠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대처자세의 의지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 3 절 스포츠기본법의 필수내용

1. 스포츠 이념 규정

만일 스포츠기본법안을 만든다면 “스포츠의 이념” 또는 “스포츠의 정신”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항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상 기본이념과 같이 법률 내에 포섭하여 직접효력을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안은 일본 스포츠법학회가 제시한 스포츠기본법안을 참고하여 선언적 규정으로 전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에서는 스포츠권에 대한 내용과 한반도가 처한 통일 과제로서의 스포츠에 대해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 문〉

스포츠는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사회의 원만한 생활과 함께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여 국가기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기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통해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은 협력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71) Vieweg, Grundinfomationen zur Dopingproblematik, in : Klaus Vieweg (Hrsg), Doping-Realitat und Recht, 1997. S.23

72) 중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등은 반도핑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기본을 명시하고 새로운 한국의 스포츠의 토양을 확립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2. 제정 목적과 용어의 선택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사용해온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체육”이라는 용어에서 탈피하여 “스포츠”라는 용어를 확고히 사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법률명의 개정 이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체육과 스포츠의 그동안 혼동에서 탈피하여 “체육”이란 용어를 “스포츠”란 용어로 통일하여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과거 스포츠는 체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경쟁적이 아니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체육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은 1960년대 이후 전문체육, 즉 엘리트 스포츠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체육 현상은 학교체육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체육이라는 용어의 부적합성을 커져왔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여가스포츠활동을 지칭하는 생활체육활동이 급증하면서부터 교육의 영역이 아닌 상업스포츠(프로스포츠)가 그地位를 확고히 함에 따라 여가스포츠의 영역이 크게 팽창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스포츠산업”이라는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대되어 기존 “체육”이라는 개념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체육”的 개념적 한계 및 “스포츠”란 용어의 사회적인 통용성과 국제화를 생각해 볼때 체육이라는 용어 대신 스포츠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스포츠 환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운동경기 및 신체운동으로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이는 강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78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체육 스포츠 협약” 제1조는 “인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신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자유롭게 발달시키고 유지하여야 하며 체육, 스포츠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체육과 스포츠는 “공평한 경쟁, 연대와 우정, 상호존경과 이해, 인간의 고결과 존엄에의 완전한 경의”에 의하여 세계시민간 및 국민간의 친밀한 친교를 촉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유네스코 체육 스포츠 협약은 “개발도상국과 공업국이 평등하게 되고 지구자원을 존중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체육과 스포츠는 스포츠의 모든 개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신체적 행복과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면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발달”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체육과 스포츠의 실천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에 제정된 구 유럽스포츠 for All 협약 역시 제1조에서 모든 개인은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조에서 스포츠는 사회문화를 발전시키는 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에 유럽 스포츠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신 유럽스포츠 협약 제2조 1 A에서도 스포츠는 자유롭고 또는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체력 향상, 정신적 충족감의 표출, 사회적 관계의 형성, 모든 수준의 경기성적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포츠 기본법 제정시 전문에 이어 제1조는 제정목적을 제시하고, 제2조는 스포츠라는 용어와 관련된 용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정의 조항이 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스포츠는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서 정의를 내릴 것이나 단순히 현행 체육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제 1 조 (제정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스포츠 정책과 행정을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

제 4 장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향

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스포츠를 통하여 국제적 위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라 함은
2. 프로 스포츠라 함은
3. 아마추어 스포츠라 함은
4. 교육상의 스포츠라 함은
5. 국제 스포츠라 함은
6. 위험 스포츠라 함은
7. 레저 스포츠라 함은
8. 스포츠 계약이라 함은
9. 스포츠 단체라 함은
10. 스포츠 시설이라 함은
11. 스포츠 기금이라 함은
12. 스포츠 보험이라 함은
13. 스포츠 지도자라 함은
14. 스포츠 계약이라 함은

해당 정의에 대한 연구는 차후에 미루도록 하겠다.

3. 국가의 스포츠에 관한 의무에 대한 내용 명시

국가는 스포츠에 관한 의무를 지고 이의 근간이 되는 내용은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제정의무, 스포츠 서비스환경조성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 아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용품에 액세스 할 권리

- 스포츠 서비스를 위한 국가의 지도의무(스포츠지도자의 양성과 신분 보장)
- 스포츠 관련 계약에 관여할 의무(프로 스포츠와 관련한 규정)
- 스포츠 분쟁시 분쟁을 조정할 국가기관을 둘 의무
-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스포츠 산업을 지원, 육성할 의무
- 위험스포츠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
- 국가의 국제스포츠의 지원으로 국가적 위상을 높일 의무
- 스포츠관련 조직과 기금 운용을 투명하게 할 의무
- 스포츠 조직간의 질서 유지와 국가의 스포츠 조직에의 협력의무
- 국가의 도핑 등 금지약물 복용시 스포츠권을 제한하거나 형사적 제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이에 대해 각조항에서는 포괄적인 규정 아래 법률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조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의무)

제 4 조 (국가의 국제경기대회지원의무)

제 5 조 (국가의 스포츠 보호의무)

제 6 조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의무)

제 7 조 (스포츠의 안전) : 이 조항에서는 스포츠 시설, 스포츠 용품의 안전과 스포츠 서비스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육성 및 지도의무를 규정하고자 한다.

제 8 조 (스포츠 자격증) :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규정이다.

제 9 조 (스포츠 환경)

제10조 (국가의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의 설치의무)

제11조 (스포츠 사고에 대처할 보험의 촉진의무)

제12조 (스포츠 관련계약에 대한 원칙) : 이 규정은 스포츠 자치권을 인정하여 스포츠 자치법 분야의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되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될 경우 간섭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지침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자 한다.

스포츠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널리 국민에 대하여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에서 자주적으로 적성 및 건강상태에 따라 스포츠를 선택하여 향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조건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기본적 계획을 책정하고 그 책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전문 위원회(예를 들어 스포츠 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체육 스포츠 현장」 제9조는 “국가기구가 체육 스포츠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 기관 및 특수한 비정부기관이 교육적 가치가 더욱 분명한 체육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라고 한다.

「구 유럽 스포츠 for All 현장」 제4조는 모든 정부가 공적 기관과 민간조직과의 사이에서 영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조장하여야 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국가조직 설립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레크레이션의 목적이 전원지대 및 물 주변지역에 출입하는 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조치 또는 정책이 취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신 유럽 스포츠 현장」 역시 현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스포츠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들 사이 및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스포츠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조를 맞추는 적절한 연락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기관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연락 조정기관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도시와 국토계획, 환경, 예술 등 레저사업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정책결정과 계획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스포츠가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국민의 스포츠에 관한 권리 명시

국민의 스포츠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서 명문 규정화한 스포츠권에 의해서나 기본권의 연관해석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스포츠기본법상 이를 명시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포츠에 대한 자유, 장애인이나 고령자 또는 노약자라고 하여 기회의 균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규칙을 가질 권리, 스포츠 직업선택의 자유, 단체가입탈퇴의 자유(결사의 자유)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안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13조 (국민 스포츠권의 내용)

제14조 (스포츠 단체의 권리와 의무)

5. 스포츠를 위한 각 부서간의 협력의무 명시

스포츠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의 명시와 공무원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5조에는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법률제정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15조 (법률 제정 의무)

국가는 스포츠 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적당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6.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 관련 법제간의 관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그동안 사용되어 온 스포츠 관련 체육법률과 혼돈을 겪을 가능성성이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관련 법제간의 조화로운 해석과 균형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

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등 기타 체육법률관의 관계에 대해 이 법이 기본법이 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16조 (스포츠관련법과 스포츠기본법간의 관계)

7. 기타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

(1) 국민에 대한 의학적 케어조치의무

독일의 「베를린주 스포츠 진흥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의학센터의 개설과 의학 중앙상담소의 개설(제16조 “스포츠 의학적 케어”)이나 스포츠와 의학정보가 기재된 개인스포츠수첩의 교부의무(「프랑스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스포츠전문의사육성을 위하여 대학 의학과정에서 전문교육이 행해질 것(「프랑스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등의 규정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2) 국가의 뉴 스포츠 컨텐츠 개발의무

그밖에 국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나 노약자를 위한 뉴 스포츠 컨텐츠 개발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스포츠 지도원에 관한 규정

국가는 스포츠에 대한 지도자들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스포츠 지도원을 설립하고 이를 위원회 단위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체육 스포츠 현장」에는 제4조에서 “체육, 스포츠의 교수, 코치, 경영관리자는 유자격자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체육, 스포츠에 전문적인 책임을 가지는 모든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도원은 다수 사람 중에서 신중하게 선발하고 충분한 전문적 수준에 달하기 위한 초보적인 부분에서부터 고

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스태프를 구성하고 훈련 시킬 적절한 조직, 기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수행하고 있는 임무에 상응하는 지위를 주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다.

「구 유럽 스포츠 for All헌장」 제8조에서 어떠한 스포츠 진흥 계획에서도 행정적, 전문적인 관리업무, 지도 및 코치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유자격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 유럽스포츠헌장」 제9조에도 인적 자원으로서 스포츠 진흥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지도자의 자격 및 학위를 주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에 의한 연수양성코스의 개설이 장려된다고 하고 연수코스는 참가자의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 5 장 결 론

스포츠법은 경기규칙, 대회규정, 참가자 등 스포츠 자체적인 규정과 같이 스포츠에 내재된 규범적 요소 뿐만 아니라 스포츠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국가규범(헌법, 민법,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프랑스는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스포츠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명문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위원회가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스포츠 교육을 행하는 자는 모두 유자격자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 보험에서도 시설보험뿐 아니라 人보험 단체보험 등 안전상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모하려는 지혜가 보이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베를린 스포츠진흥법의 경우 스포츠 진흥의 역할을 시설 설비를 갖추는 것에서 출발하여 스포츠시설건설중앙위원회(동법 제9조)라는 스포츠조직의 존재를 처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스포츠의학센터와 스포츠의학중앙상담소(동법 제16조)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실제 찾아보고 스포츠의 의학적 케어에 대한 조치의무도 스포츠기본법에 부가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은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 역시 현행 스포츠진흥법이 법률의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려워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가는 시설과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일본체육연맹을 비롯한 수많은 스포츠조직을 중심으로 지도자가 양성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스포츠를 운영해가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캐나다의 「신체적 스포츠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신체활동”정책과 “스포츠”정책의 이분화가 인상적이었다. 또한 법률의 상당한 비중을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의 구성과 임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분쟁해결기구”에 관한 한 본 연구 중 가장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프랑스가 “프랑스 올림픽 스포츠 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시 “스포츠 분쟁해결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입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기본법은 각 나라의 장점만을 취합할 수는 없을까 고려해 본다. 생각건대 캐나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에관한법률”상 스포츠분쟁해결기구 관련규정을, 독일 베를린 “스포츠진흥법”상 스포츠시설 관련규정을, 일본 “스포츠진흥법”상 생활체육진흥과 스포츠조직간의 조화와 균형을(국가가 원조,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생활체육을 이끌어나가는), 프랑스 “신체적 스포츠적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법률”상 프로 스포츠에 대한 일정한 국가의 관여와 스포츠자격증, 보험 규정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캐나다와 같이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분리하고 신체활동 즉, 건강증진 의무에 대한 정책방향과 스포츠 진흥에 대한 정책방향을 한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 목적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법률에서의 수용은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이라는 명명 아래 스포츠와 체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 하였기 때문에 법률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게 되고,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새로운 입법들을 우후죽순으로 입법하여야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스포츠법은 공법 또는 사법의 한 영역만이 아니며, 공법 영역과 사법 영역, 그리고 사회법 영역 전반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수법 분야로서 종합법학의 성질을 띤다. 국가는 더 이상 스포츠를 공법과 사법으로만 분리하는 체계에서 탈피하여 스포츠의 일정한 자치영역을 존중하되 스포츠에 대한 기본방향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담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과 “스포츠 기본권의 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스포츠법은 사후의 분쟁해결의 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방법학의 방향으로서 “소 잊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입법은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향유하는 국민 모두에게 스포츠의 혜택을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제 경기대회에서 국가의 이미지 고양을 위하여 전문 스포츠의 지원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포츠에 대해 스포츠 자치법 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스포츠마다 룰이나 자치규정의 통일을 유도하고, 누구에게나 스포츠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특정인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지 않도록 국가적 시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스포츠 조직을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 특히 민간 스포츠 조직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가지게 권고하여야 하며, 권한 남용시에는 법적 제재를 두거나 스포츠조직의 통제를 국가조직 아래 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데, 국가는 이를 장려하고 감독할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스포츠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계약의 문제에 있어 (예를 들어 스포츠 에이전트에 있어 선수보호의 문제 등) 심히 공정성을 해하는 계약이 없는지 검토하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뿐 아니라 스포츠 에이전트에 있어서 라이센스를 부과하고 위임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조직의 통제가 스포츠 진흥을 저해하여서는 안되며 이 때에도 스포츠에 대한 자율권은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스포츠에 대해 스포츠 국가법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스포츠에 대해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에 대한 목적에 따라 스포츠 정책의 방향을 달리하고 법률을 각각의 방향에 따라 제정하여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 프로스포츠시장에서의 과열경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선수나 관련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해 효율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 스포츠의 경우, 국제경기참가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가 이미지 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상시법률로 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스포츠에도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양성하여 이를 도와야 하며 아마추어 스포츠인이 미래의 프로 스포츠인 또는 전문 스포츠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도박과 도핑 등 스포츠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페어플레이정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도 스포츠를 진흥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의 형성을 위하여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은 서둘러져야 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에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건전한 스포츠 국가를 만드는 일은 바로 스포츠 법학이 계속해 나가야 할 금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부 록 1

캐나다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
2003, c. 2

(Assented to 19th March, 2003) 2003년 3월 19일 동의

서 문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과 스포츠는 캐나다의 문화 그리고 사회의 통합적 부분들이고 건강, 사회적 부종, 다원적, 경제적 활동,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이익들을 창출한다는 것을 승인 한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의 중요한 이익들과 스포츠 관습의 이익들 사이의 인식들이 증가되기를 바란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킴과 그들의 스포츠의 참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캐나다인들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캐나다 정부는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증진하고, 공용어법률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정부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의 단체를 독려하여야 하고, 신체활동과 스포츠단체, 신체활동과 스포츠 증진에 있어서 신체활동과 스포츠 단체 그리고 사적영역들을 독려하여야 한다;

지금, 그러므로 친애하는 여왕, 캐나다의 상 하의원의 합의와 조언들을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SHORT TITLE

Short title

1. 이 법률은 신체활동과 스포츠 법률이라고 한다.

INTERPRETATION

Definition of “Minister”

2. 이 법에서, 장관은 이 법의 목적에 의한 위원회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캐나다 추밀원의 회원 또는 회원들을 의미한다.

POLICIES

Physical activity policy

3. 신체활동에 관한 캐나다의 정책에 관한 정부의 목적은 (a) 건강과 웰빙(행복추구)의 근본적 요소로서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것 ; (b)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삶속에 신체활동을 통합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 (c) 모든 캐나다인들이 활동적인 것을 막음으로써 직면하는 장애들을 줄임으로써 원조하는 것

Sport policy -- principles

4. (1) 스포츠에 관한 캐나다의 정책에 대한 정부는 도핑 방지 스포츠, 모든 국민들을 공정하고 존중으로 대우, 스포츠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정하고 완전한 참여 그리고 공정한, 평등한, 명백한, 정확한 분쟁해결을 포함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에 의하여 근거되어진다.

Sport policy -- objectives

- (2) 스포츠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목적들은 (a) 스포츠의 실행에 참여를 증가시키고 스포츠에서 장점을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b) 캐나다의 스포츠체계를 최대로 확립하는 것

OBJECTS AND MANDATE

Objects of Act and mandate of Minister

법률의 목적과 부령

5. 이 법의 목적은 캐나다에서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증진하고 발전시키고, 독려하는 것이다. 장관은 이 목적들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다 는 고려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 (a)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련한 연구 또는 논문의 원조 또는 착수;
 - (b)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련한 국내 그리고 지역 컨퍼런스의 계획;
 - (c)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련한 공로의 치하로서 공로상, 유공증의 수여의 제공;
 - (d)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련한 정보를 조사하고 배포;
 - (e) 이 법률의 목적을 촉진시킴으로써 관련된 단체의 지원을 원조, 협조 그리고 협력하는 것;
 - (f) 신체활동과 스포츠의 격려, 진흥, 그리고 발전에 관련한 연방 발의의 조정, 특히 스포츠에 관한 캐나다 정부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발의, 주요한 스포츠 행사의 주최 및 반 도핑에 맞는 이행, 캐나다 정부의 다른 부서 또는 기관들과의 협력;
 - (g) 신체활동 또는 스포츠 관련한 다른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착수 또는 지원;
 - (h) 국내 그리고 국제적 스포츠에 캐나다인의 참여의 증진과 발전에 대한 지원 제공;
 - (i) 스포츠와 관련한 이 법률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치들과 다른 인적자원의 트레이닝 제공;
 - (j) 스포츠에서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또는 장학금의 제공;
 - (k) 캐나다 그리고,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개인과 사회적 발전의 장치로서 스포츠의 진흥을 독려;
 - (l) 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사적영역에 경제적 지원을 독려;
 - (m) 캐나다의 스포츠 체계에 비활성화 단체의 참여의 촉진;
 - (n)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주와 지방 정부의 독려;
 - (o) 캐나다 경기들의 상설과 주최에 관련한 캐나다정부의 발의와 노

부 록 1

력의 협력:

(p) 스포츠의 대체적 분쟁 해결의 독려와 지원이다.

Financial assistance

6. 이 법률의 목적에 따라, 장관은 공용어 법률의 파트 4와 7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장려와 공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AGREEMENTS AND ARRANGEMENTS

Contribution agreements

7. (1) 위원회에서의 위원장의 승인과 함께 장관은 신체활동 또는 스포츠의 독려, 진흥과 발전계획에 의한 프로그램들의 착수에 발생되는 경비에 대한 지불을 주와 지방과 협의할 수 있다.

Agreements to implement Canada's policy regarding sport

(2) 장관은 스포츠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정책의 이행에 관하여 어느 주 또는 지방과 합의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agreements

8. 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과 함께 장관은 신체활동과 스포츠의 독려, 진흥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다른 외국의 국가의 정부와 협의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RE OF CANADA

Establishment of Centre

Centre established

9. (1) 캐나다 스포츠 분쟁 해결 기구라고 불리어지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 이 법률에서 기구에 관한 언급은, 분쟁해결 사무국과 연구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Not an agent of Her Majesty

(2) 이 기구는 여왕의 대행자가 아니다.

Not a departmental or Crown corporation

(3) 이 기구는 부문별 단체가 아니거나, 재정 법률의 효력 범위 내의 정부기관이 아니다.

Status of arbitrator or mediator

(4) 이 연방법원 법률의 목적으로, 기구 또는 중재인, 조정인은 다른 법률이 미치는 다른 기구 또는 위원회, 연방기구가 아닌 기구의 후원으로 봉사를 제공한다.

Both official languages to be used

(5) 이 기구는 캐나다의 공용어로 공무를 수행하고 의사소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Head office

(6) 이 기구의 본부는 기구의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캐나다 내의 장소에 위치한다.

2003, c. 2, ss. 9, 38.

Mission and Powers

Mission

10. (1) 기구의 임무는 스포츠 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a) 스포츠 분쟁에 대한 국내 대체적 분쟁 해결의 사무; 그리고 (b) 대체적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지원

Interpretation

(2) (1)의 목적을 위해, 스포츠 조직들 사이의 분쟁과 스포츠 조직과 그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회원들을 포함한)의 분쟁들을 포함한 스포츠 분쟁

Powers

11. (1) 그것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 기구는
(a) 그 기구에 제공되는 어느 기금의 사용, 제공된 기금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

부 록 1

- (b) 그 기구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하는 ;
- (c)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집행; 그리고
- (d) 그 권한의 행사와 그 임무의 이행에 대한 공헌되는 어떤 다른 것들을 행하는 자연인의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Restrictions

- (2) (1)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는
 - (a) 그 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가치 있다고 고려되는 부동산의 획득 또는 건설할 수 없다;
 - (b) 그 자신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하는 계약 또는 합의에서 명백히 나타내어야 한다.
 - (c) 그 기구에 대한 신탁 또는 대표하여, 어떠한 배당을 통한 법인 회사를 세울 수 없다.
 - (d) 그 기구를 대표하여 또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 획득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Board of Directors

Role

- 12. 그 기구의 사무와 직무는 이사회에 의하여 처리되고, 목적에 따라 이사회는 그 기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Composition

- 13. (1) 이사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구의 전무(집행)이사는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Non-application of provisions

- (2) 14조, 16조 그리고 18조는 집행이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Appointment (임명)

- 14. (1) 이사들은 가능한,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좋지 않은 행위가 없는 한 공직을 주기 위하여 장관에 의하여 임명된다. 그 이사들의 1/2 이상이 넘지 않는 공직의 기간이 1년내에 종료된 이사는 연임

되어 임명될 수 있고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Appointment criteria

- (2) 이사들은 스포츠 단체와 협의하여 장관에 의해 규정된 지침에 따라 선택된다.

Guidelines

- (3) 그 지침은 이사회는

- (a) 스포츠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 그 임무를 그 기구가 성취할 수 있게 할 능력 또는 경험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고
(b) 스포츠 단체 그리고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과 2개 국어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Statutory Instruments Act does not apply

- (4) (3)의 규정에 언급된 지침은 위임명령법률의 목적에 의한 위임명령이 아니다.

Exclusion

15. 이사는 그 기구의 임원으로서 임명될 수 없다.

No remuneration

16. 그 이사들은 어떠한 급여도 받을 권리가 없다. 하지만, 그 기구의 정관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법률하의 직무와 책무에 관련한 것에 의하여 발생한 합리적 여비 및 다른 경비들에 대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By-laws (정관)

17. (1) 이사회는 집행과 그 센터의 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정관을 만들 수 있고 이 법에 의하여 그 이사회의 의무와 기능의 수행에 관련한 정관을 만들 수 있다. --에 대한 정관의 규정을 포함하면서,

- (a) 집행 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의 위원회 설립, 그리고 그 위원회의 의무와 기능과 권한;
(b) 전무이사를 포함한, 그 센터의 의장과 관리들의 의무, 직무, 권

한들 :

- (c) 그 센터 관리들의 임명과 급여 ;
- (d) 집행위원회에 이사회의 어떤 기능의 위임과 직무들의 수행에 관한 절차;
- (e) 분쟁해결 사무국, 재원국, 센터의 다른 기관들의 위임, 의무, 직무;
- (f) 센터에 의하여 제공되는 집행에 관한 자격의 조건과 기간;
- (g) (i) 센터에서의 대화, 사무규정과 하루일과에서 그 센터의 스태프의 영어와 프랑스어의 이용에 대한 규율원칙들을 포함한 캐나다의 공용어에 관한 정책 수립, 그리고
- (i) 그 정책의 적용에 관련한 분쟁해결의 절차;
- (h) 그 센터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무와 시설에 지불되어지는 비용의 고정 또는 임금과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의 결정;
- (i)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이 조정인 또는 중재인 그리고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스포츠 분쟁 해결에 대한 조정절차와 중재절차의 규정
- (j) 중재인들 또는 조정인 들에 관한 자격
- (k) 센터의 이사회, 사무원들 그리고 피고용인들에 대한 윤리규정의 설치뿐만 아니라, 센터의 후원 하에 분쟁해결의 봉사를 하는 중재인들과 조정인 들에 관한 윤리 규정의 설치; 그리고
- (l) 그 센터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들의 고용 기간 그리고 조건들을 포함한 인적 감독.

By-laws available to the public

- (2) 센터의 주 사무소에는 모든 정관의 복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센터의 평상적인 업무시간동안에는 누구라도 그 정관을 볼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정관의 전체 또는 부분을 복사할 수 있다.

Statutory Instruments Act does not apply

- (3)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조례)는 위임명령법률의 목적에 의한 위임명령은 아니다.

Chairperson

Designation

18. 이사회와의 논의 후, 장관은 3년내에 좋지 않은 행위가 없는 한 그들 중 한명을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의장은 연임을 할 수 있고 정당한 근거로 장관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Duties

19.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의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어느 의무 또는 직무를 수행한다.

Absence, etc., of chairperson

20. 의장이 부재 또는 결석 된다면, 또는 의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이사회는 그 부재, 실격, 공석 동안에 의장의 의무와 직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권한을 수행할 위원을 지명한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ecutive Director

Appointment

21. 이사회는 그 센터의 집행이사를 임명한다.

Duties (의무)

22. 집행이사는 그 센터의 집행부의 장이다. 그리고 이사회를 대표하여 그 센터의 지휘와 업무 관리 그리고 그날그날의 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Absence, etc. of executive director

23. 집행이사가 부재 또는 실격된다면 또는 집행이사의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의장은 그 부재, 실격 또는 공석 기간 동안 전무이사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와 책무를 이행할 사람을 임명한다. 그러나 그 이사회의 승인은 90일 이내에 얻어야 한다.

Delegation

24. 이사회는 이 법률에 의하여 집행이사에 언급된 권한, 의무 또는 직무를 어느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Personnel

25. 그 센터는 그것의 활동의 적절한 행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피고용인과 전문적 조언자들 그리고 전문 조언자들을 고용 할 수 있다.

Status

26. 그 센터의 감독자, 사무직원들과 피고용인들은 캐나다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관하여서도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udit

Audit committee

27. (1) 이사회는 적어도 3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감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Duties of audit committee

(2) (a) 회계(감사)위원회는 센터에 적절한 외부 통제 절차를 이행하고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b) 회계(감사)위원회는 외부 통제 절차를 재심, 평가 그리고 승인 한다;

(c)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센터의 연간 회계보고를 재심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그 회계가 승인되기 이전에 그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d) 회계위원회는 그 센터의 연간 회계 보고서와 그 회계감사관의 보고서를 토의 하기 위하여 그 센터의 회계감사관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e) 회계위원회는 외부 통제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토의를 위하여 그 센터의 회계감사관과 경영진들을 만날 수 있다.

Special report

(3) 회계위원회는 그 의견 중 장관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킬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에 대하여 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의 사본을 각 사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Meeting of directors

(4)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련한 어떤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Technical assistance

(5) 회계(감사)위원회는 임시적 이유로 이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 또는 특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Independent audit

28. 그 센터의 회계 와 재정거래는 이사회가 지명한 독립적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독립 회계감사인은 문서로 된 보고서를 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rbitrators and Mediators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e

29. 센터는 그 센터의 후원으로 분쟁 해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인들과 조정인 들을 책임진다.

(a) 정관에 의해 규정된 자격과 일치;

(b) 그 센터로부터 독립하고;

(c)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단체로서, 캐나다의 공용어의 하나 또는 다른 것 또는 둘 다로 서비스를 제공.

General Provisions

Duty of care

30. (1) 센터의 모든 감독관과 직원은 그 의무와 직무를 수행하고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 (a) 그 센터의 최고의 이익의 관점에서 신의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 하여야 한다;
- (b) 사회적으로 유사한 신분인 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분별 있는 사람의 주의, 근면, 기술을 실행한다; 그리고
- (c) 이 법률과 그 센터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No exculpation

- (2) 이 법률에 의한 감독관 또는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의무로부터 감면 하는 계약 또는 해결하는 규정은 금지, 그 규정 또는 정관 또는 그들의 어떠한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감독관 또는 직원을 감면하는 것은 금지된다.

Reliance on statements

- (3) 감독관 또는 직원은 신의성실하게 행하였다면 제1항에 의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그 센터의 직원에 의한 감독관 또는 직원에 대한 그 센터의 재정 보고 또는 그 센터의 재정 조건에 공정히 반영한 것으로서 그 센터의 회계인의 서면보고에 의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 법조인, 공증인, 회계사, 기술자, 감정평가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보고서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전문적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보고서에 의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visions of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chapter c-44) apply

31. (1) 그 센터는 이 법률 하에 편입된 회사 그리고 이 법률의 규정들이 편입의 규정들이라면, 회사법의 규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그 센터와 감독관들, 직원들, 피 고용인들에게 적용된다.
- (a) 회사법16조 (정관은 센터에 권한에 대한 수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센터의 권한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센터의 행위의 유

효성에 대한 수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b) 회사법제20조(1), (2), 그리고 (4) (기록, 의사록, 기록의 장소);
- (c) 회사법제22조(1) (회사의 기록 형식);
- (d) 회사법제23조 (법인의 인장은 문서를 유효화 시키지 않는다.);
- (e) 회사법제108조(2) (감독관의 사임);
- (f) 회사법제114조(1), (2), (5)에서 (7) 그리고 (9) (감독관의 회의);
- (g) 회사법제116조(감독관과 직원들의 행위의 유효성);
- (h) 회사법제117조 (회의 장소에서 감독관의 해결의 유효성);
- (i) 회사법제120조 (감독관과 직원들의 이익의 충돌);
- (j) 회사법제123조 (감독관의 의견차이);
- (k) 회사법제124(1)에서 (6) (감독관과 직원의 배상 그리고 감독관과 직원들의 책임에 대한 보상);
- (l) 회사법제158조 (감독관에 의한 재정명령의 승인);
- (m) 회사법제161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 (n) 회사법제170조 (정보에 대한 회계인의 권리);
- (o) 회사법제171(4)에서 (7) 그리고 171(8)(a) (회계감사 위원회의 의무와 행정);
- (p) 회사법제172조 (회계감사인의 대차표에 대한 비방에 대한 특권);
- (q) 회사법제253조(1)과 (3) (감독관에 대한 통지);
- (r) 회사법제255조 (통지의 포기); 그리고
- (s) 회사법제257조(1)과 (2) (증거로서 센터의 증명서).

Description with cross-references

- (2) 삽입구에서 기술적 용어들은 (1)의 항목의 형태가 항목의 부분이 아니고 오직 참조의 편의에 의하여 삽입된 것은 캐나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른다.

Canada Corporations Act does not apply

- (3) 1970년 캐나다의 개정된 조항의 C-32 장인 캐나다 회사법은 그 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Corporate Plan and Annual Report

Corporate plan

32. (1) 센터는 각각 회계 년도에 대한 법인 계획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계 년이 시작하기 전 30일이 이내에 총리에 그 계획 안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Scope and content of corporate plan

- (2) 법인계획은 센터의 활동과 모든 영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 (a) 그 센터의 목적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b) 센터가 활동과 재정적 전략 그리고 그것의 인적 자원의 전략 들을 포함하면서 그것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용하기위한 생각에 대한 전략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c) 다음 회계년에 대한 센터의 활동과 자본 예산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Corporate plan to be made public

- (3) 장관에게 법인의 계획안 전달된 후, 그 센터는 그 계획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Corporate plan to be tabled

- (4) 장관은 그 계획을 받은 후 하원의 개회 첫 15일중에 어느 날에 각 위원회에 장관은 그 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그 법인 계획안의 사본을 하여 상정한다.

Annual report

33. (1) 각 회계년 말 후의 4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장은 장관에게 회계년에 대한 그 센터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Contents

- (2) 보고서는

- (a) 센터의 재정 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관련한 회계인의 보고서를 포함한다.;

- (b) 센터 법인의 계획안의 요약을 포함한다.; 그리고
- (c) 법인의 계획안에 규정된 목적들에 관련한 센터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Remuneration

- (3) 센터로부터 회계년에 직원이 받는 총 연봉, 어떤 배상 또는 금전적 이득을 포함하면서, 그리고 그 센터로부터 회계년에 감독관이 받는 어떤 배상 또는 금전적 이득의 액은 그 년에 대한 연간 재정보고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Distribution of report

- (4) 연간보고서가 장관에게 전달된 후, 센터는 그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Annual report to be tabled

- (5) 장관은 그 보고서를 받은 후 하원의 첫 회기 15일중 어느 날에 각 위원회에 장관은 그 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보고서의 사본을 만들어 상정한다.

Public meeting

- 34. (1) 장관에게 연간보고서의 전달 후 60일 이내, 센터는 현재의 회계년 동안에 그 센터의 활동에 관련한 다른 문제들과 보고서를 고려하기 위하여 센터의 선택에 의하여 캐나다의 도시에 공청회를 소집할 수 있다.

Notice of meeting

- (2) (1)항에 의한 소집된 회의 시간 전 적어도 30일내에, 센터는 정관에 의하여 그 회의의 장소 및 시간을 공표하여야 한다.

Dissolution

장관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35. (1) 총리는 그 센터를 명령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부 록 1

- (a) 센터가 9조의 시행 후 1년 이내 17(1) (e), (g) 그리고 (i)에서 (k)에 따라 정관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 (b) 장관은 그 센터의 일과 영업이 시작된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센터의 해산을 납득한다면;
- (c) 9조의 시행 후에 5년의 기간 내에 만료되는 때에, 센터의 평가가 행해진 후, 장관은 그 센터가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한다면; 또는
- (d) 감독관의 3분의 2에 의하여 통과된 해산의 지지를 받는 센터에 의한 청원.

Debts and liabilities

- (2) 그 센터의 해산의 경우에, 부채와 책임에 대한 지불, 또는 부채와 책임의 지불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만든 후에 남아있는 센터의 자산은 총리의 특정한 명령에 의하여 센터와 유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양도 될 수 있다.

Dissolution

- (3) 장관이 그 센터를 해산한다면, 센터의 일들은 36(b)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조항과 규정에 일치에 구속된다.

REGULATIONS

Regulations

36. 위원회에 의장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 (a) 이 법률의 목적에 의하여, 신체활동, 스포츠 와 스포츠 조직의 명백한 정의;
- (b) 그 센터의 구속에 관하여;
- (c) 제3조에서 제8조의 목적과 규정에 대한 효과적 이행에 대한 일 반적인 것;

CONSEQUENTIAL AMENDMENT

37. [Amendment]

증보의 조화

38. [Amendment]

39. 취소

COMING INTO FORCE

40. 제38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규정 위원회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날 또는 시기에 시행된다.

*[Note: Section 38 in force on assent March 19, 2003; sections 1 to 37 and 39 in force June 15, 2003, see SI/2003-129.]

(제38조의 2003년 3월 19일 동의 효력으로; 제1조에서 제37조 그리고 제39조는 2003년 6월 15일 시행)

◆ 참고자료

부 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스포츠와 레크레이션법”

NATIONAL SPORT AND RECREATION ACT NO. 110 OF 1998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스포츠 위원회, 국가 및 레크레이션 연맹들 과 다른 기관들 사이의 관계적 연계의 증진과 발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목적의 수단을 제공한다;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서의 공평과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다;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다; 장관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규정한다.

이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

“General Assembly”(국민의회)

국민의회는 국가 연맹들, 여러 법률에 의한 스포츠 조직들, 그리고 이 법률에서 고려된 다른 기관들을 대표하는 모임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사람에 의한 집합을 정당하게 구성하고 있는 의미를 갖는다.

“Minister”(장관)

장관은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관을 의미한다.

“NAPCOSA”

NAPCOSA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 파랄림픽(신체장애자 올림픽) 위원회를 의미한다.

“National Coaching and Accreditation Institute”(국립 코칭 및 인가기관)

국립 코칭 및 인가기관이라 함은 제7조(1)(f)에서 언급된 기관이다.

“national federation”(국가연맹)

국가연맹이라 함은 공화국에 스포츠 관련 법률을 통제 및 행정부서에 권한으로서 관련된 국제 통제 기관에 의하여 인식된 공화국의 스포츠 법률의 전체를 규율하는 것이다;

“NOCSA”

NOCSA는 남아프리카 올림픽 위원회이다.

“prescribe”(규정)

규정이라함은 규칙에 의한 규정을 의미한다.

“provincial department of sport and recreation”(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지방부)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지방부는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책임지는 지방성을 의미한다.

“Recreation Movement”(레크레이션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이라 함은 스포츠위원회, SANREC 및 모든 레크레이션연맹으로 구성되어진 활동을 의미한다.

“recreation service”(레크레이션 서비스)

레크레이션 서비스는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일의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regulation”(규칙)

규칙은 제14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을 의미한다;

“SANREC”

SANREC는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크레이션 위원회를 의미한다.

“SISA”

SISA는 스포츠 정보 그리고 과학기관을 의미한다.

“sports or recreation body”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기관은 국가지위에서 스포츠 행정부서 또는 레크레이션에 속하는 어떤 국가연맹, 대행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Sports Commission”(스포츠 위원회)

스포츠 위원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포츠 위원회를 의미한다;

“Sports Movement”(스포츠 활동)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 위원회, NOCSA 및 모든 국립 연맹들로 구성된 활동을 의미한다.

“this Act”(이 법률)

이 법률이라 함은 어느 규정도 포함한 것을 말한다;

“WASSA”

WASSA는 남아프리카 여성 및 스포츠를 의미한다.

2.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port and recreation in Republic.-

(공화국에서의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의 증진과 발전)

- 1) 스포츠 위원회는 NOCSA를 제외한 공화국에서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통합 기관이 될 것이다.
- 2) 스포츠 위원회는 때때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의 증진과 발전에 대한 지침을 발전시킬 수 있다.
- 3) a) 모든 정부 기관, 부서, 지방 또는 지역의 기관은 체육과 관련한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들, 훈련 프로그램들 및 지도자의 자격의 발전을 포함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을 수행한다.
b) 스포츠 위원회는 a) 규정에서 언급한 활동들에 관련하여 정부 기관, 부, 지방 주 또는 지역기관이 협의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 4) 모든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기관들은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스포츠 위원회와 협의 및 통합을 하여야 한다.

3. Intergovernmental liais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정부간의 연결 및 다른국가와의 협조)

스포츠 위원회는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관련하여 정부간의 지위에서 연락(연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Determination of sport and recreation policy

(스포츠의 결의와 레크레이션 정책)

- 1) 때때로, 올림픽 게임과 관련하여 스포츠 위원회 및 NOCSA와 협의 후 또는 스포츠 위원회 및 NOCSA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안

서들의 검토 후에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관련하여 수행될 일반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장관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은 여러 사항 중에서 아래와 관련된 것이다.

- a) 모든 노력들이 효율적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에서 다양한 활동의 선수들 중에서 역할과 책임을 승인하는 것
- b) 제10조의 규정들에 의한 다양한 목적의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들의 건립과 보강을 위한 년 기금의 규정 그리고 때때로, 주, 지방 정부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관련 기관들과의 협의와 함께 스포츠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권에 의한 것
- c)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의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지원부대의 발전, 다양한 대중 참여 계획들에 관한 원조에 대한 유지.
- d) 사회에 특정 이익 단체들에 관련한 목적으로 된 계획들에 의한 건강 인식의 강화.
- e) 스포츠에 잠재적 인재들을 확인
- f) 주요 경쟁 경기에서의 공화국의 대표로 선출된 스포츠 선수들의 양성에 대한 투자
- g) 스포츠 통합 과정의 구체화에 대한 원조; 그리고
- h) 국립 팀들이 그 절차에 모든 당사자들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수립

3) 장관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은 모든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기관들을 구속한다.

5. Membership of Sports Commission(스포츠 위원회의 자격)

1) 스포츠 위원회의 회원자격은 스포츠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인정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모든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기관들에 열려질 것이다.

2) 성, 인종, 장애, 종교 또는 신조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거나 체계를 묵인하거나 허가해주는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연맹에게는 회원 자격을 주지 못한다.

6. National and recreation federations(국가 및 레크레이션 연맹들)

1) 국가와 레크레이션 연맹들은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훈련 내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레크레이션 연맹은 스포츠 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계획들의 지원 그리고 참여에 활동적이어야 한다.

7. Training of sport and recreation leaders(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지도자들의 양성)

1) 스포츠 위원회는 국가 수준에서 양성된 지도자들, 행정관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결원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훈련에 대한 정비 또는 제안을 할 것이다.

a)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자 교육을 정비하거나 제안;
b) 양성 교육이 완결된 후 스포츠 위원회에 의해 수여된 자격에 관련한 기준들을 확인한다.

c) 양성된 스포츠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d) 합의된 기간 내에 스포츠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이 교육에 따를 수 있도록 정비한다;

e) 훈련 지도자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결에 대한 보상체계의 수립;
그리고

f) 국립 코치 및 인가 기관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코치에 관련한 직업 명부를 장래의 고용인에 배포하고 유지하는 기준을 확인한다.

2) 스포츠 위원회는 국가적 지위에서 양성된 지도자의 결원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a) 레크레이션 지도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하거나 제안하여야 한다; b) 지도자 양성 학교는 양성교육이 끝난 후 스포츠 위원회에 의하여 수여된 승인된 자격을 표준화시킨다. c) 양성된 레크레이션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의

정보를 관리한다. d) 합의된 기간 내에 레크레이션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 체계화한다. e) 지도자 양성 교육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보상 체계의 수립 f) 국가 코치 및 공인 기관이 성공적 지도자에 관련한 장차의 고용인들에 일자리 명부에 배포하고 관리되는 기준들을 확인할 것이다.

8. Resources for sport and recreation(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의 재원)

- 1) 스포츠 위원회는 기금의 유용성에 따라, 기금정책 그리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 지위에서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위한 체육시설을 규정할 것이다.
- 2) 그러한 시설들의 규정의 장점은 a) 유지에 대한 합의; 그리고 b) 상업적으로 실행가능성에서 그러한 시설을 시작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설립으로서 모든 시설들의 보수·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그러한 시설들을 계획할 때, 스포츠 위원회는 장애인 스포츠 국민들과 관중들에 그러한 시설의 이용성이 주어진 특별한 고려를 확인하여야 한다.

9. Programmes to promote equity in sport and recreation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증진을 위한 계획)

- 1) 스포츠 위원회는 플레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목적으로 된 계획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스포츠 위원회는 a) 때때로, 국가적 대중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참여의 계획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b) i)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계획들 및 역무들에 대중 참여의 확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협력하기 위하여; 그리고 ii) 상호교류; 를 위하여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및 대중 참여의 이익을 가지는 다른 관련 조직체들과 함께 협성하기 위한 주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부서들과 지역 기관들을 독려하여야 한다. c) 주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부서들이 스포츠 위원회의 계획을 이용하기 위하여 독려하여야 한다. d) 우선적 내용 : i)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계획들 그리고 역무들의 발전, 안정 그리고 우선적 그리고 ii) 이 들 계획들과 역무를 이행하기에 필요

한 체제에 대한보고 e) i) 여성 ii) 재학중인 청년 그리고 더 이상 재학중이 아닌 청년들 iii) 장애인 iv) 노약자; 그리고 v) 방치된 지방 지역들,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발전과 전달에 대한 계획들과 관련된 우선권을 받는 것을 확인한다. f)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의 참여의 이익과 건강 생활의 이익을 공화국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게 하기위하여 계획들을 보강하고 경험과 의견들을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에서의 국제적 조직들의 지지를 구한다.

10. Funding of sport and recreation(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기금)

- 1) 기금 정책에 따라서, 스포츠 위원회는--
 - a) 회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기금의 경우 기금 정책의 이행;
 - b) 기금에 관련한 국내 연맹들의 부분에서 창조성과 신뢰의 독려;
 - c) 주 그리고 지역 기금에 대한 다양한 지역들에서 주 그리고 지역 기관들에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집행위원회의 회원들의 사무실에 주 연맹들을 지도한다.
 - d)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서의 지원자, 여성, 노약자, 방치된 지방 지역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증가시키고 측면을 증가시킨다.
 - e) 정부기금의 수령인으로부터 행정부의 조건에 맞는 기준을 요구 한다.
- 2) 스포츠 위원회는 국가적 그리고 레크레이션 연맹들에 기금을 배정함으로써 발전에 사용되는 기금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불우한 그룹들 특히, 여성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의 높은 수준에 참여하는 것으로 배제하는 연맹들이거나 발전적 계획들이 없는 국가적 또는 레크레이션 연맹들에는 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11. National colours and incentives for sports achievers and recreation practitioners

(스포츠 성취자들과 레크레이션 개업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와 국가적 배려)

- 1) 스포츠 위원회는 국가적 배려에 대한 모든 지원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국가적 보상 기관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국가적 배려는 적용 규칙에 따라 수여되어야 한다.
- 3) 스포츠 위원회는, 때때로, 스포츠 성취자들과 레크레이션 개업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12. Environment and sport and recreation(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환경)

- 1) 모든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은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기관의 관리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Dispute resolution(분쟁해결)

- 1) 모든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기관은 회원들간 또는 통제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공하는 외부 절차 및 배상에 따라.
- 2) (1)항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스포츠의 회원 또는 레크레이션 기관, 또는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기관 그 자체는 스포츠 위원회에 분쟁을 진술 할 수 있다.
- 3) 스포츠 위원회는 (1) 또는 (2)항과 관련한 분쟁에 관련하여, 그 문제에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의 최선의 이익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4) 스포츠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a) 행정부의 부패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불법행위의 주장이 있는 경우, b)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의 회원간의 직무사이의 심각한 또는 분열적 분열 c) 성, 인종, 종교 또는 신조, 또는 권리들의 침해 그리고 개인의 자유 또는 어는 법의 침해에 근거한 차별의 경험 또는 관행되어진 체계의 계속성의 경우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기관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 위원회는 장관이 헌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임명하기 위하여 공화국 대통령에 청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 Regulations(규칙)

스포츠 위원회와의 협의 후, 장관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록 2

- a) 이 법률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규정될 필요가 있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 b)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에 관하여;
- c)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지도자의 양성에 관하여;
- d)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대중의 참여에 관련하여;
- e)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에 대한 지원의 제공;
- f) 스포츠 지원 역무의 제공;
- g) 레크레이션 지원 역무의 제공;
- h)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일의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에 관하여
- i) 스포츠와 레크레인션의 기금과 관련하여;
- j) 스포츠 공적 그리고 레크레이션의 개업에 대한 장려와 관련하여;
- k) 일반적으로, 장관이 이 법률의 목적을 성취를 위하여 만든 규칙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일들에 관하여;

15. Delegation of duties, powers and functions by Minist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장관과 최고위원에 의한 직무, 권한, 임무의 위임)

- 1)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서, 장관은 그의 결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스포츠 위원회의 다른 위원 또는 스포츠 위원회의 위원장에 이 법률에 의하여 그에게 직무, 권한, 임무를 부여하거나 수여하거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 2)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서 위원장은 그의 결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스포츠 위원회의 다른 위원에 이 법률에 의하여 그에게 직무, 권한, 임무를 부여하거나 수여하거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 3) 이 법률규정에 의한 어떤 위임도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16. Short title (표제)

1998년 국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법률은 관보에서 공포와 대통령에 의하여 지정된 날에 시행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장기원, 학교체육시설물의 규격시험 및 검사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2002)
- 장경근, 헌법에 있어서 스포츠의 개념[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 장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스포츠와 법, (2000)
- 장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한 스포츠 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2004)
- 강성일, 레저환경변화에 따른 체육정책 추진 방향[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 고두현, 베를린의 월계관, 국민체육진흥공단, (199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 김상겸, 프로스포츠와 직업의 자유, 스포츠와 법, 제2권, (2001)
- 김상겸,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스포츠와 법, 제4권, (2003)
- 김상겸, 한국헌법상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제6권, 스포츠와 법, (2005)
- 김양례, 노인의 체육활동실태분석및활성화방안, 체육과학연구원, (2003)
- 김영문,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 스포츠와 법, 제2권 (2001)

참 고 문 헌

- 김용섭, 스포츠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 김용섭,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 *한림법학 제16권*, (2005)
- 김용섭 · 손경한, 문답스포츠법, *법영사*, (2002)
- 김은경, 독일법상 스포츠에 관련한 보험제도의 고찰, (2000)
- 김은경,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제2권 (2001)
- 박영옥,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체육과학연구원*, (2004)
- 박훤일, 스포츠포츠진흥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 변해철, 스포츠분야에서의 국가권력개입의 법적 근거와 개입형태, *한국 외대 법학연구소*, (1999)
- 배재성, 한국 스포츠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04)
- 성문정,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방향, *스포츠와 법*, 제6권 (2005)
- 성문정,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입법방향 연구[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 원용수, 스포츠계약과 보험과의 관계[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 양병희, 한국에서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ADR제도,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
- 연기영,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2권, (2001)
- 연기영, 체육관계법 정비 및 보완연구, *체육과학연구원*, (2000)
- 연기영, 한국에 있어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6권, (2005)
- 유승희, 학교체육실태조사및개선방안, *체육과학연구원*, 2002
- 유진식,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와 법, 제3권 (2002)

유진식, 스포츠사고와 국가배상책임[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윤용택, 스포츠권과 스포츠기본권에 관한 시론적 고찰, 스포츠와 법 (2005)

이상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이상철, 스포츠산업의 행정규제 개선방안[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이용식, 레저스포츠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2002)

이한규, 체육지도자 자격증제도개선방안, 체육과학연구원, (2003)

이형규, 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스포츠와 법, 제2권, (2001)

임건면, 스포츠중재합의와 내용통제[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장재옥,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장경학, 1930년대 한국 스포츠 상황,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정동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3권 (2002)

정승재,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분쟁,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

정승재, 스포츠선수와 직업의 자유[아시아스포츠법의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조성규, 스포츠 행정조직의 법적 성격과 권리구제,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

조성식, 스포츠서비스업실태분석, 체육과학연구원, (2003)

참 고 문 헌

최병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스포츠사고, 스포츠와 법, 제3권,
(2002)

스포츠산업진흥법안 검토보고서, (안민석의원발의안) 2005

2. 외국 문헌

- B. G. Rader, American Sports (2d ed), 1990
- Pfister/Fritzweiler/Summerer, Praxishandbuch Sportrecht, 1998
- Das Diskussionspapier des wissenschaftlichen Beirats des DSB, 1980
- Deutsch, Teilnahme am Sport als Rechtsproblem, 1993
- Grayson, Sport and the Law, 2000
- Fritzweiler/Pfister/Summer, Praxishandbuch Sportrecht, 1998
- Häberle, Verfassungslehre als Kulturwissenschaft, 1982
- Häberle, Sport als Thema neuerer verfassungsstaatlicher Verfassungen, in : FS für Thieme, 1993
- Häberle, Die Entwicklungsländer im Prozess der Textstufendifferenzierung des Verfassungsstaates, in : Rechtsvergleichung im Kraftfeld des Verfassungsstaates, 1992
- Heinemann, Sport und Wirtschaft, eine unheilvolle Allianz?, in : Grupe (Hrsg), Kulturgut oder Körperkult? 1990
- Hortleder, Sport in der nachindustriellen Gesellschaft, 1978
- Kummer, Spielregel und Rechtsregel, 1973
- Vieweg, Grundinfomationen zur Dopingproblematik, in : Klaus Vieweg(Hrsg), Doping-Realität und Recht, 1997.

- Krogmann, Grundrechte im Sport, 1998
- Schimke, Sportrecht, 1996
- Polizeiliche Probleme bei Sportgroßveranstaltungen, BazVBI, 1993
- Pfister, Autonomie des Sports, sport-typisches Verhalten und staatliches Recht, in: FS für Lorenz, 1991
- Papier, Sport und Umwelt, NVWZ, 1986
- Reute, Grenzen der Verbandsgewalt, ZHR, 1980
- Smith, Sports and Freedom: The Rise of Big-Time College Athletics, 1990
- Guttmann, From Ritual to Record: The Nature of Modern Sports, 1978
- Steiner, Verfassungsfragen des Sports, NJW 1991
- Steiner, Staat, Sport und Verfassung, DÖV 1983
- Tettiger/Kleinschmittger, Aktuelle Rechtsprobleme im Konfliktfeld von Sport und Umweltschutz, JZ 1992
- Haas/ Martens, Sport, 2004
- Vieweg, Zur Einführung : Sport und Recht, JuS 1983
- Wise/Meyer, International Sports Law and Business, 1997
- Würtenberger, Einführung der Verfassung des Freistaats Thüringen, in : Verfassung des Freistaats Thüringen und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4
- W. J. Baker, Sports in the Western World (rev. ed.), 1989

참 고 문 헌

- 千葉 正士, スポーツ法學から応用法學へ, 東海法學 第28号, (2002)
- 齊藤 健司, フランスのスポーツ基本法, 季刊 教育法 第104号(1995. 12)
- 千葉 正士, スポーツ法學序説, 信山社, (2001)
- 小笠原 正, スポーツ振興法, 季刊 教育法 第110号(1997. 6)
- 森川 貞夫, スポーツ振興法の基本的問題点, 季刊 教育法 第105号(1996. 3)